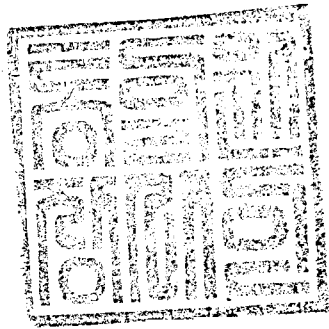


國統政 90-12-98

南北韓 共同漁撈水域

- Model 設定과 運用方案 -



研究責任者：李 秉 錫
(부산수산대)

國 土 統 一 院

1 9 9 0

册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의 「南北韓 交流協力 對策開發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特殊課題用役의 研究結果입니다.

本 研究는 南北韓 漁業의 自然的 特性과 現況을 분석하고 各國間 共同漁撈水域 및 漁業協定の 運用實態를 비교·검토한 것에 기초하여, 向後 南北韓間에 設定 가능한 共同漁撈水域의 모델과 그것의 運用方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 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12

統 一 政 策 室

目 次

I. 緒 論	5
II. 韓半島近海의 海洋構造와 重要魚族의 回游相	7
1. 韓半島의 地勢와 海洋의 特性	7
A. 海底地勢	7
B. 韓國近海의 海洋構造	8
2. 近海産 重要回游性 魚類의 基本回游相	14
A. 東海區産 寒流性魚類	14
B. 東海區産 暖流性魚類	19
C. 西海區産 底棲魚類	25
D. 西海區産 浮魚類	29
E. 南海區産 浮魚類	31
III. 韓國 水産業의 現況과 展望	34
1. 韓國의 水産物 基礎需要와 供給現況	34
2. 2000年代初의 水産物需要와 供給展望	36
A. 需要展望	36
B. 國內漁業에서의 供給展望	37
C. 海外漁業에서의 供給展望과 海外依存度	39
3. 海外水産業의 새로운 展開方向	43

IV. 北韓 水産業의 現況과 展望	45
1. 北韓海域의 特性	45
A. 東海區	45
B. 西海區	46
2. 水産政策 및 管理	47
A. 水産政策	47
B. 水産管理	48
3. 水産業의 基盤造成	50
A. 漁船勢力	50
B. 排他的 經濟水域의 宣布와 漁業協定の 締結	51
C. 遠洋漁業 進出	56
4. 水産物 生産	56
5. 앞으로의 展望과 課題	61
V. 韓半島周邊水域에서 國際漁業의 力學關係	64
1. 排他的 水域의 宣布와 그 영향	65
A. 蘇聯의 排他的 水域	65
B. 日本의 排他的 水域	66
C. 北韓의 排他的 水域	68
2. 韓國과 日本間의 漁業紛爭과 漁業協定	70
A. 漁業紛爭과 平和線의 宣布	70
B. 漁業協定の 締結과 主要內容	72
C. 協定締結後의 韓·日間漁業關係의 變化	75

3. 中國과 日本間의 漁業關係	77
A. 背景	77
B. 民間漁業協定	79
C. 政府間漁業協定	80
4. 北韓과 蘇聯과의 漁業關係	82
5. 北韓과 日本間의 漁業關係	83
6. 日本과 蘇聯間의 漁業紛爭과 漁業協定	85
A. 背景	85
B. 漁業協定の 체결과 淸타 配定	87
7. 南北韓間의 漁業關係와 韓國의 自律規制	90
8. 韓國과 中國과의 漁業關係와 韓國의 自律規制	95
VI. 南北韓 共同漁撈水域의 設定 및 運用方案	99
1. 共同漁撈水域 設定의 前提條件	99
2. 共同漁撈水域의 設定과 그 運用方案	103
A. 協定當事者	103
B. 一方入漁方式의 경우	104
C. 雙方入漁方式의 경우	106
3. 積極的 姿勢의 必要性	109
VII. 結論	111
參考文獻	115

I. 緒 論

최근 南北韓間의 交流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진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政治的 次元에서의 對話나 交流가 어려우면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經濟的 交流부터 시도해 보자는 것이 韓國政府의 方針이고 이러한 提議가 北韓側에 의해 하루 아침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더라도 점진적으로 수용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漁業分野에서의 交流도 대단히 가능성이 클 것이다. 특히 최근 韓國은 水産業 生産量 세계 7위의 大水産國으로 발돋움하였으며, 國民의 動物性蛋白質 基礎需要量은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있으나 生活水準의 향상에 따라 더 많은 動物性 蛋白質이 필요하고, 또 水産物의 加工輸出用 原資材로서도 많은 水産物이 필요하며, 北韓도 水産物을 國民의 動物性 蛋白質 食糧源으로서 뿐만 아니라 外貨獲得源으로서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고 제3차 7個年計劃에서는 水産物生産을 10大 目標의 하나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水産業의 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海洋은 東西로 兩分되어 있어서 周年 漁業活動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韓國側 海域에서의 조업을 갈망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韓國쪽에서 볼 때 北韓의 海洋에서 어획가능하리라 기대되는 것은 高價 魚種으로는 연어·송어가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고, 多獲性 大衆魚로는

東海에서는 명태, 콩치, 멸치, 정어리, 오징어 등, 西海에서는 조기, 갈치 등이 있으나 量的으로는 명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게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며, 따라서 南北韓間에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한다고 해서 韓國側에 커다란 이익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利害得失을 떠나 南北韓이 共同繁榮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共同漁撈水域을 設定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研究는 韓半島 近海의 海洋構造와 重要 回游性 魚族의 基本回遊相, 南北韓의 漁業의 實態와 앞으로의 展望, 韓半島周邊水域에 있어서의 國際漁業關係와 漁業協定 등을 검토한 위에 南北韓間에 체결가능 하리라 예상되는 共同漁撈水域의 設定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韓半島 近海의 海洋構造와 重要魚族의 回游相

1. 韓半島의 地勢와 海洋의 特性

A. 海底地勢

(1) 水深과 大陸棚의 分布

韓半島의 地勢는 남북으로 뻗은 등뼈산맥이 東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산맥의 東쪽은 경사가 크고 西쪽은 경사가 완만하다. 이와 같은 陸地의 地形은 海底의 地形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東海岸은 海岸線이 등뼈산맥에서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m 等深線이 海岸에서 불과 수마일 내지 십수마일 되는 곳에 위치하며, 1000m 等深線도 곧 바로 이웃에 위치한다. 그리하여 東海는 최심부 4,049m, 평균수심 1,700m나 되는 심해를 이루고, 大陸棚은 東海의 전 면적의 2%에 불과하다.

西海區는 이와 정반대로 陸地의 경사가 완만하고, 또 中國대륙쪽도 그러하므로 海底는 전반적으로 경사가 완만하여, 黃海의 水深은 최심부에서도 103m에 불과하고 평균 44m에 지나지 않으며, 黃海 전체가 얇은 大陸棚이다. 또 이 海域은 경사가 완만한 위에 干滿의 차가 크므로 간조시에는 육지에 가까운 곳이 노출되어 방대한 干潟地를 이룬다.

南海區는 東·西兩海區를 연결하는 해역이니만치 水深도 兩海區의 중간이며, 최심부 227m, 평균 수심 101m이고 전해역이 大陸棚이다.

(2) 島嶼의 分布와 海岸線의 길이

韓半島의 海岸線 총 길이는 17,267km로서 국토의 총길이에 비하여 매우 긴데, 이것은 海岸線의 굴곡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다.

東海區는 등뼈산맥의 斷層이 海岸線에 가까워서 평야나 하천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海岸線이 매끈하나, 東韓灣, 迎日灣 등은 만입이 커서 東海産 각종 魚族의 産卵場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西海區는 東海區와는 대조적으로 海岸線이 복잡하고, 島嶼, 河川, 暗礁 등이 많으므로 각종 水産動植物의 은신처로서 중요하며, 따라서 도처가 각종 魚族의 産卵場·棲息場이 된다.

南海區는 東海區처럼 비탈진 深海가 아니고, 그렇다고 西海區처럼 극단적인 淺海가 아니며, 비탈, 모래사장, 평지 등이 뒤섞여 있고, 또 半島와 섬이 곳곳에 산재하여 소위 多島海式 지형이므로 漁業的으로도 다양하다.

B. 韓半島近海의 海洋構造

(1) 海流

韓半島近海에는 暖流系인 黑潮의 한 支流인 對馬暖流가 北流하고, 寒流系인 親潮의 한 支流인 北韓寒流가 南流·교차하며 그 세력의 변화는 漁業에는 물론, 직접·간접으로 기후와 농업, 기타 각종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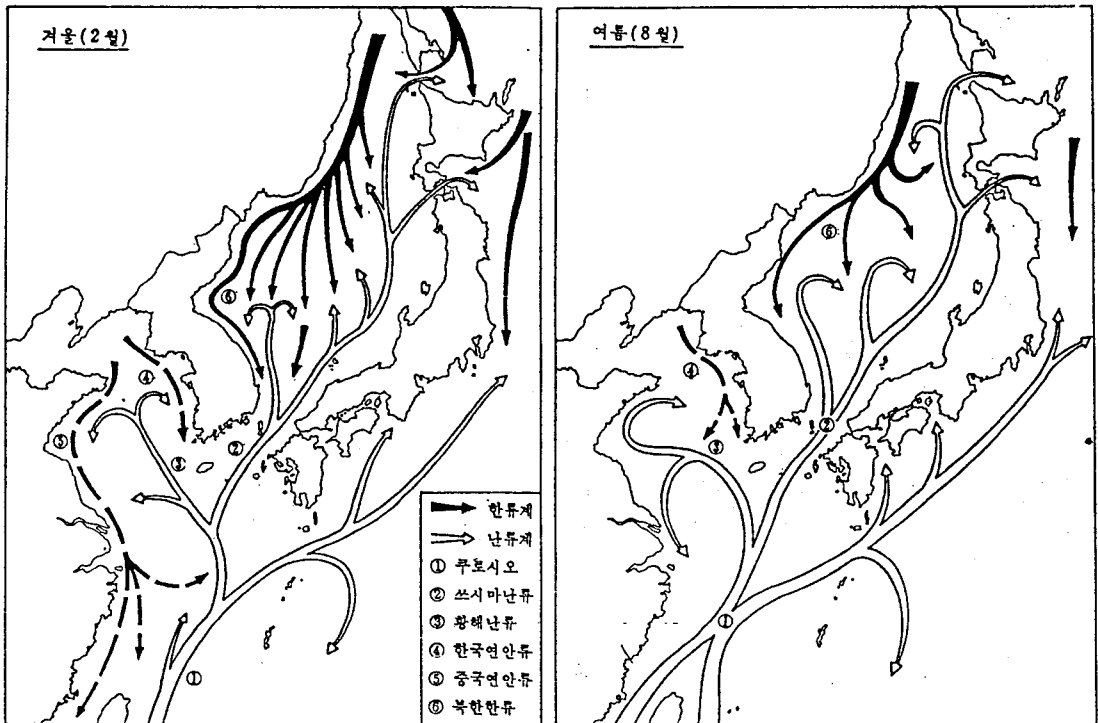
日本 九州 南쪽에서 갈라진 黑潮의 한 支流는 東支那海를 北上하다가 濟州道 南쪽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한 갈래는 大韓海峽을 통과하여

東海로 들어가고, 다른 한 갈래는 西海로 들어가는데, 앞의 것을 對馬暖流, 뒤의 것을 黃海暖流라 한다.

한편 타타르해협(間宮海峽)을 통과한 親潮의 한 支流와 黑龍江·豆滿江으로부터의 排水 등의 沿岸水가 혼합된 北韓寒流는 蘇聯 沿海州에서 韓國 東海岸을 따라 南下한다.

a. 南海區 및 東海區

東海區에서는 이들 본격적인 寒流와 暖流가 계절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화한다. 大韓海峽을 거쳐 東海로 들어간 對馬暖流의 큰 줄기는 日本쪽을



<그림 2-1> 韓國近海의 表面海流¹⁸⁾

따라 北東으로 흘러, 津輕·宗谷 두 해협으로 나가는 것이나, 大韓海峽으로 들어간 것의 일부는 韓國 東南端을 원편으로 돌아 東海 沿岸을 따라 北上한다. 北上의 한계는 여름철에는 咸鏡北道 연안에까지 이르는 수도 있으나, 겨울철에는 鬱陵道와 竹邊을 연결하는 선 정도이다.

또 東海는 그 입구인 大韓海峽의 斷面積이 東海 전체의 容積에 비하여 아주 작고, 또 下層에는 冷水塊가 있으며, 北쪽에는 여름철이라도 寒流勢力이 있으므로 對馬暖流의 垂直分布는 北으로 갈수록 알아져서 北쪽끝에 있어서는 가장성한 때라도 수온 20℃ 이상인 층은 10m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철이라도 對馬暖流의 水溫은 10℃를 넘는데, 對馬暖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의 중부 이남에서는 수면하 200m의 깊이까지 이 세력이 미치고 있다.

北韓寒流의 변화는 대단히 불규칙적이나, 盛期인 겨울철에는 보통 江原道 南部에까지 뻗치고, 그 以南에서는 下層流가 되는 것 같으며, 迎日灣 이남에서는 表面流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江原道 수원단 연안은 이들 寒·暖 兩流가 서로 부딪치는 곳으로서 海況도 대단히 복잡하고, 따라서 漁業的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b. 西海區

西海區에는 東海區처럼 뚜렷한 海流가 존재하지 않으나, 對馬暖流의 한 갈래인 黃海暖流가 黃海 中央部를 거쳐 渤海灣까지 北上하며, 이 海流의 補充流로서 渤海灣 方面에서 中國 沿岸을 따라 南下하는 寒流性 海流가

있는데, 이것을 中國 沿岸流라 한다. 또 韓國의 西海岸에도 沿岸을 따라 南下하고 南海岸을 우회하여 對馬暖流와 연결되는 韓國沿岸流가 있는데, 이것은 韓國 西海의 沿岸水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염분과 수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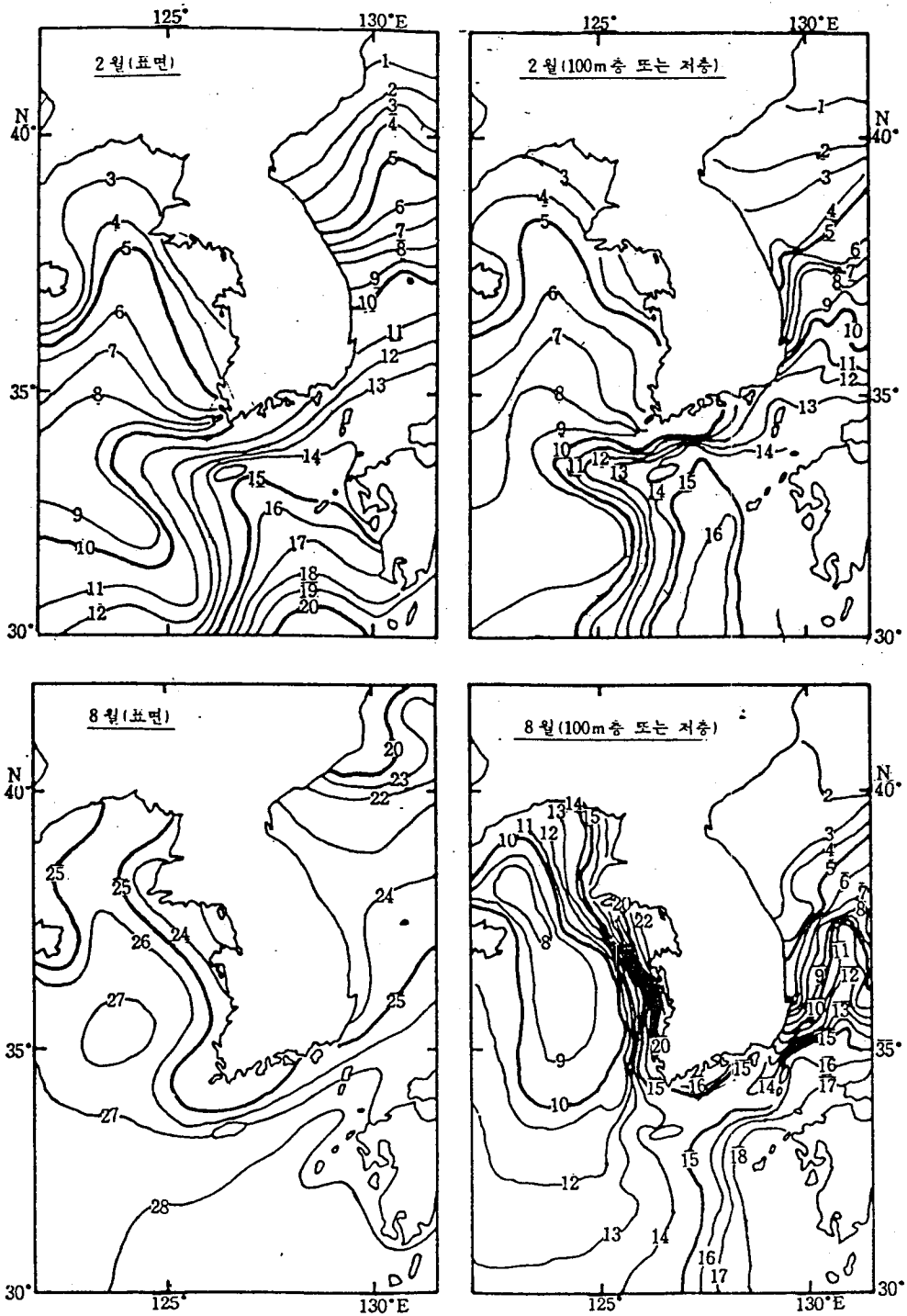
(2) 水溫

水産動植物의 分布回游에는 水溫, 鹽分, 透明度 등의 여러가지 海洋學의 요소가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그 중에서도 水溫이 가장 지배적이다.

a. 東海區

東海區의 表面水溫은 여름철에는 對馬暖流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져, 南部海域에서는 최고 30°C, 北韓 近海에서는 25°C 내외까지 이르나, 겨울철에는 寒流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낮아져, 南部海域에서도 10°C 내외이고, 北韓 沿岸의 대부분은 上·下層이 모두 1°C 이하로 낮아져 완전히 寒水性의 바다가 된다.

그런데 漁業적으로 중요한 것은 東海 中·下層의 冷水層이다. 즉, 鹽分 34.17%, 水溫 1°C 내외의 冷水層이 東海下層水의 中心勢力인데, 이것은 日本의 北西部 연안에서는 對馬暖流의 영향으로 연안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부딪치지 않으나, 韓國 東海岸의 中部 以南에서는 海岸에서 5~6마일, 北韓에서는 1~2마일 내외, 水面下 20~30m층에서도 이 冷水層에 부딪치며, 또 때로는 江原道~慶尙北道 沿岸에서는 이 冷水層이 海岸에까지 출현하는 수도 있다. 또, 겨울철 寒流勢力이 강할 때는 이 冷水層의 일부가



<그림 2-2> 韓國近海의 水溫分布圖¹⁸⁾

大韓海峽의 底層을 거쳐 南海岸으로 진출하여 대구 등의 寒流性 魚族이 鎮海灣에 와서 産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b. 西海區

西海區에 있어서도 水溫의 年變化는 상당히 심하다. 먼저, 여름철 먼바다에 있어서의 水溫은 北部에서 25°C 내외, 南部에서 28~29°C에까지 이르나, 겨울철에는 大陸性 高氣壓으로부터 불어내는 찬 바람의 영향으로 表面水溫은 매우 낮아진다. 그런데 水溫이 낮아지면 比重이 커지므로 上層水는 下層으로 내려가는데, 黃海 北部는 얕으므로 上·下層의 海水 사이에 대류가 일어나 上層에서 냉각된 水塊가 계속 下層으로 내려가고, 上·下層이 고루 냉각되어 얼게 된다.

봄철과 더불어 얼음은 녹고 여름철이 되면 表面水溫은 높아지나, 이 때는 表層이 水溫이 높고 比重이 가벼우므로 對流가 일어나지 않고, 상하로 水溫 躍層이 형성되며, 中部 以北의 深層에는 여름철이라도 5~6°C의 冷水塊가 남게 된다. 이 冷水塊의 勢力은 때로는 南西沿岸 일대에까지 번치는데, 대개의 魚群은 이 冷水塊를 피하여 회유하므로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c. 南海區

南海區에서는 여름철 對馬暖流의 세력이 강해짐으로써 表面水溫은 30°C까지도 이르며, 겨울철에도 寒流性 海流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일이 없으므로 表面水溫은 13°C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 3海區 중

水溫이 가장 높은 해역이다. 따라서 각종 水産動植物의 分布도 다른 海域보다 풍부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각종 暖流性魚族의 越冬場이 되고, 봄~여름에는 産卵場이 되므로 漁業이 가장 다양하고, 또 가장 먼저 개발된 해역이다.

2. 近海産 重要 回游性 魚類의 基本 回游相

韓國近海에서 어획되는 魚類 中 量的으로 많거나 혹은 漁獲金額이 커서 經濟性이 높은 魚種 中 寒流性魚族으로는 명태가 있고, 그외는 모두 暖流性魚族이다. 이 中 東海區에서 주로 어획되며 量的으로 많은 것으로는 오징어, 정어리, 콩치 등이 있고, 量은 적으나 經濟性이 높은 것으로는 방어가 있다.

西海區에서 주로 어획되는 것으로는 조기가 量的으로나 經濟性으로나 중요하나 최근에는 量이 자꾸 줄고 있고, 그 대신 갈치가 상당히 많다.

南海區에서 주로 어획되는 것으로는 멸치가 으뜸이며, 그 외 고등어, 쥐치 등이 있다.

이들 魚族은 모두 南北韓에 걸쳐서 어획되며, 南北韓의 漁業을 논의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 基本回游相을 이해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그 樣相을 언급한다.

A. 東海區産 寒流性魚類

東海區産 主要寒流性魚類로는 명태, 대구와 연어·송어가 있으나 대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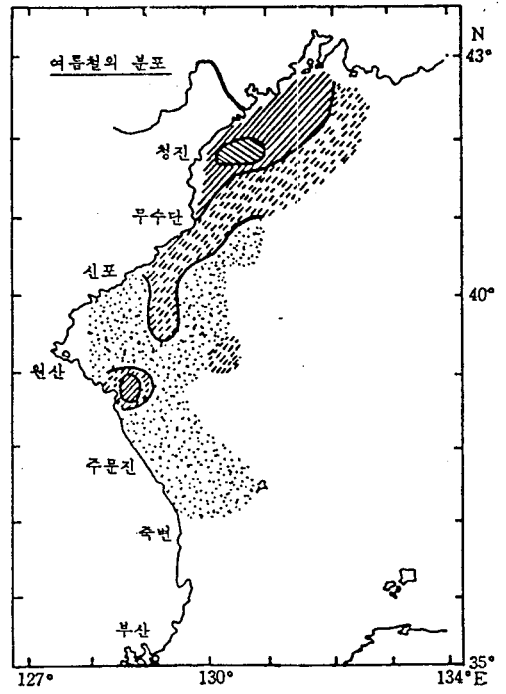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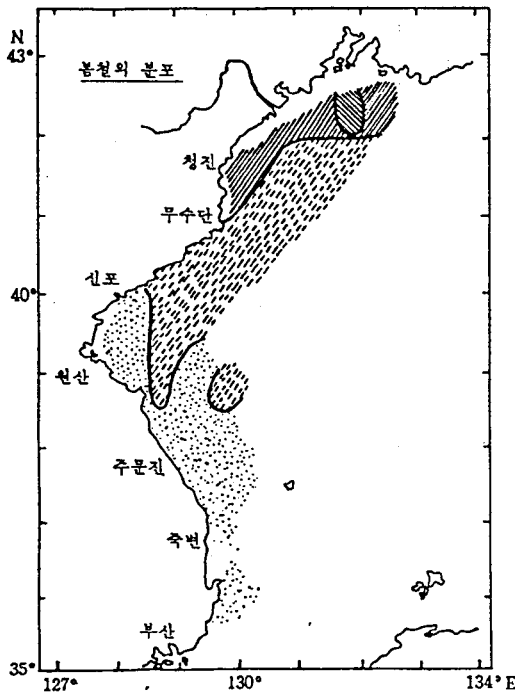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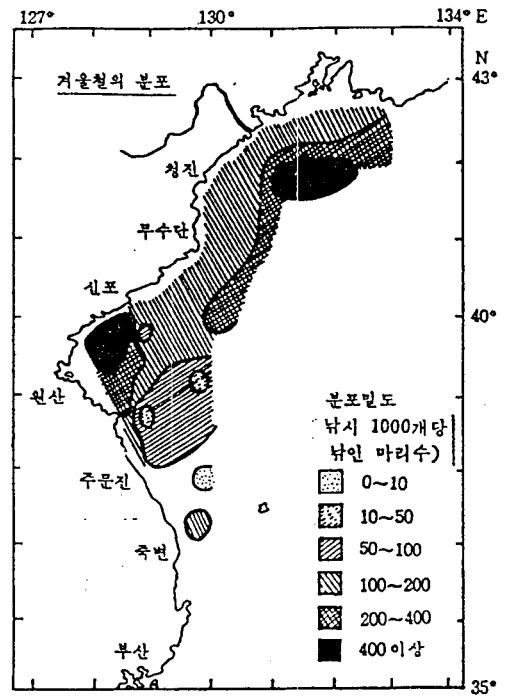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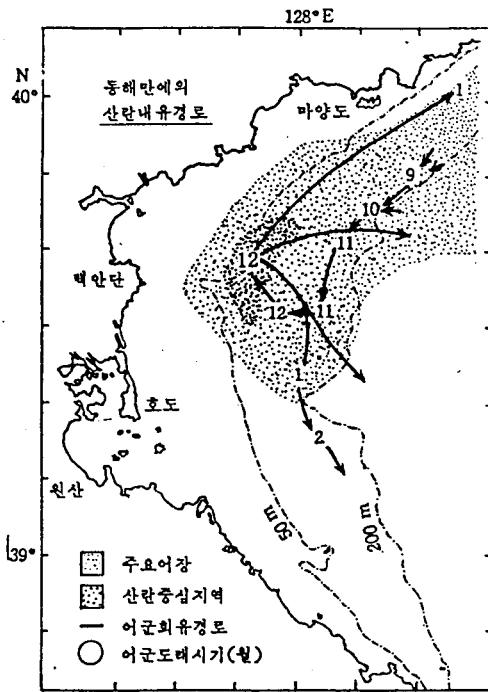
최근 資源이 많이 줄었으므로 여기서는 명태와 연어·송어만 논의한다.

(1) 명태

명태는 北太平洋의 寒流域에 널리 분포하는 魚類이나 漁業이 주로 이루어지는 海域은 韓國 東海岸, 日本의 北海道, 사할린 주변, 캄차카반도 남부주변, 베링해 등 대규모의 産卵場이 있는 海域이다.

명태는 계절에 따라 深淺移動을 하는데, 오호츠크해 이북의 北太平洋에서는 冬深夏淺移動을 하며, 分布의 南쪽 끝인 韓國近海에서는 冬淺夏深移動을 한다. 즉, 分布의 北部에서는 겨울철에는 수심이 얇은 大陸棚淺海는 보통 얼어버리는데, 명태는 冷水性魚種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차가운 곳은 싫어하여 水溫이 약간 높은 深海로 이동하고, 여름철이 되어 沿岸水溫이 適水溫보다 높아지면 水溫이 낮은 淺海로 이동하면서 産卵 또는 索餌한다. 그에 비하여 韓國近海에서는 여름철에 沿岸水溫이 너무 높으므로 이를 피하여 水溫이 낮은 深海로 이동하고, 겨울철에 沿岸水溫이 適水溫 정도로 낮아지면 淺海로 이동하면서 産卵 또는 索餌한다.

韓國 東海岸에 있어서의 명태의 主産卵場은 東韓灣인데, 産卵 初期인 초가을부터 産卵群은 遠海의 중층으로부터 灣의 중앙부 이북의 200m 등심선을 따라 内유하기 시작하며, 12월 상순경 난의 성숙과 더불어 産卵場에 들어가서 産卵한다. 産卵을 마친 어미는 1월경부터 寒流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南으로, 혹은 遠海로 이동한다고 추정되며, 江原道에서는 주년 어획되나, 主漁期는 10월부터 다음해 1월경까지이고, 본포의 南쪽 한계는 대체로 慶尙北道의 南端 정도라고 보아진다.



<그림 2-3> 韓國近海에서의 명태의 계절별 분포¹⁸⁾

(2) 연어·송어

연어·송어는 韓半島周邊海域에서 어획되는 魚種 중 가장 비싼 고기이므로 各國의 이 魚種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北太平洋産 연어·송어는 대략 40° N이북의 寒流域에 살며, 종류는 生物學的으로는 25종이나 된다고 하나, 漁業的으로 중요한 것은 홍연어, 백연어, 은연어, 왕연어, 곱사송어의 5종이고, 이것들이 日·美·加漁業條約 이나 日·蘇漁業條約 등 연어·송어漁業과 관련되는 國際條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쿠릴列島以南의 日本과 韓半島 周邊에서 어획되는 것은 백연어와 곱사송어가 대부분이고 그외의 것은 거의 어획되지 않는다.

연어·송어는 다른 魚類와는 특이한 生態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關係 國間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연어·송어는 아주 맑은 물이 용출되는 江에서 産卵·孵化되고 稚仔魚期에 江에서 내려가(降河回游) 바다에서 2~3년 자라 나이가 4~5세가 되어 성숙되면 다시 자신이 産卵·孵化된 江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서(溯河回游) 암수가 짝을 지어 産卵하고 産卵을 마친 어미는 예외없이 죽는 그런 기이한 生活史를 지니고 있는데, 자신이 産卵·孵化된 江을 되찾아가는 확률(母川回歸率)은 80~95%나 된다고 한다.

北太平洋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캐나다, 소련, 日本, 韓國 등 여러나라는 적든 많은 연어·송어가 溯河하는 江을 가지고 있으나, 主産卵場은 北太平洋의 寒流域을 바로 끼고 있는 미국, 캐나다, 소련 등지이다.

연어·송어가 가지고 있는 生態的特性에서 보아 이 魚種은 우선 資源量 자체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며, 또 성숙하면 반드시 母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母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구태여 海洋에 나가서 어획을 할 필요가 없고, 母川에 溯河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어획하여 알과 정자로서는 人工孵化를 시키고 어미는 食用으로 하는 식으로 資源의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海洋에서 연어·송어漁業을 해온 日本과의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1952년 聯合國과 日本이 平和條約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漁業을 둘러싼 여러가지 제약이 가해졌는데, 특히 日本, 美國, 캐나다 사이에는 175° E 以東의 美洲쪽 漁場에서 日本이 스스로 漁業을 포기한다는 日·美·加 漁業條約이 체결되었으며, 日本과 蘇聯 사이에서는 해마다 연어·송어 漁獲쿼타를 배정한다는 日蘇漁業協定이 체결되어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韓國은 1966년 水産廳의 지원을 받아 釜山水産大學 實習船 白鯨號로써 이 漁業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進出을 시도했으나 關係國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고 만 경험을 가지고 있다.

韓國近海에서의 연어·송어의 主成育場은 蘇聯 沿海州 以北의 東海부터 오호츠크海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韓國에서도 洛東江에도 연어·송어가 溯河를 했으나 지금은 거의 전무하고 東海岸에 河口가 있는 江에는 적든 많은 溯河하고 있어서 1933년 이후 人工孵化事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韓半島에 있어서의 産卵場은 北韓쪽에 많고 따라서 南北韓間에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한다던가 하면 필연적으로 연어·송어漁業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와 관련되는 協議過程에서 領海밖의 水域에서의 漁業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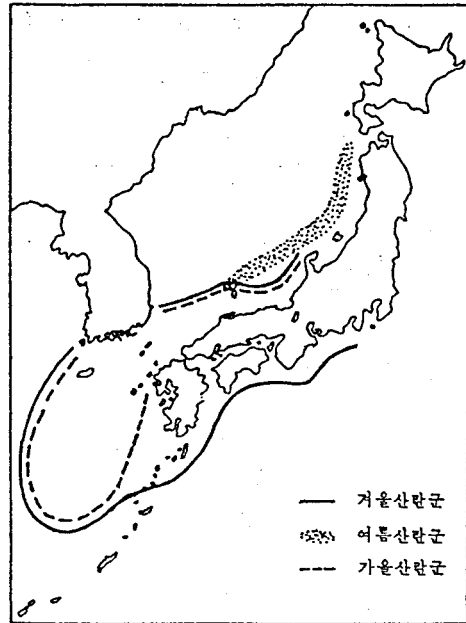
B. 東海區産 暖流性 魚類

(1)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東支那海부터 韓國 南海岸 및 東海岸, 日本의 北海道 연안 및 太平洋岸 전역에서 주년 産卵하고 있으나, 보통 主産卵場과 産卵期가 다른 3개의 계군, 즉 겨울産卵群, 가을産卵群, 여름産卵群으로 가르고 있다.

겨울産卵群은 東支那海, 韓國 南海岸, 日本九州 북서부 연안 일대의 해역에서 주로 12~3월에 産卵하며, 가을産卵群은 主産卵場은 겨울産卵場과 같으나 産卵期는 5~9월이고, 여름産卵群은 東海의 南部해역에서 5~6월에 産卵한다.

살오징어의 回游路는 대단히 커서 1년동안에 南北으로 大回游를 한다. 즉 봄부터 여름에 걸쳐 暖流 세력이 강해지고, 水溫이 상승함과 더불어 北上하면서 成長回游한다. 그러나



<그림 2-4> 韓國近海에 있어서의 18) 살오징어 産卵場 推定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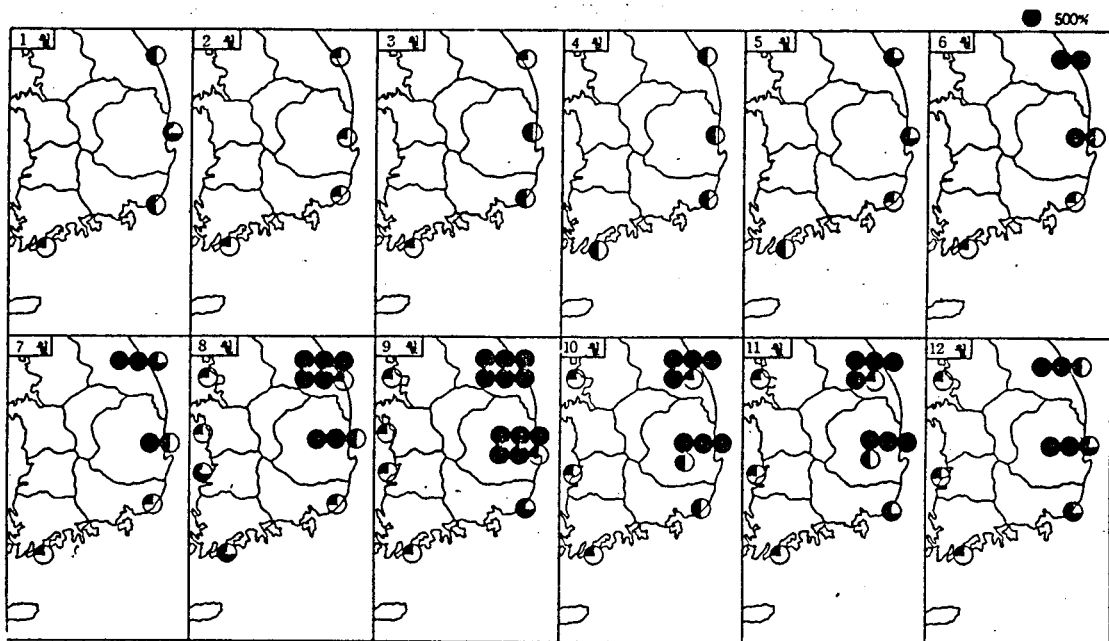
大回游를 하는 것은 주로 겨울 産卵群이고, 이것이 살오징어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겨울 産卵群의 北上回游 經路를 보면 12~3월 東支那海에서 産卵되어 그 해역에서 卵·稚仔魚時代를 보내다가, 韓國 東海쪽에서는 對馬暖流에 의하여, 日本 太平洋岸쪽에서는 黑潮에 의하여 차차 북쪽으로 운반되면서 성장하며, 그 分布範圍는 東海쪽에서는 그 전역부터 타타르해협을 거쳐 오호츠크해에까지 이르고, 太平洋岸쪽에서는 日本의 연안을 따라 48~49° N 선까지 북상한다.

南下回游는 水溫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연안을 따라 이루어 지는데, 韓國 東海에서는 이 北上과 南下의 변환기가 主漁期가 된다. 그러다가 12~1월에 접어들면 그 南下速度는 빨라지는데, 이 때가 交接期에 해당한다. 交接을 마친 어미는 다시 東支那海에 들어가서 産卵 후 死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름 産卵群과 가을 産卵群에 대해서는 겨울 産卵群 만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여름 産卵群의 成熟群은 5~8월에 日本의 山陰地方沿岸에서 山形縣沿岸까지 분포하는 것 같다.

가을 産卵群은 大和堆를 중심으로 한 東海에 널리 분포하고, 對馬暖流의 遠海分枝를 타고 北上하여 8월에는 北海道까지 이르며, 또 한편 北韓에서 蘇聯의 沿海州 연안을 따라 北上하는 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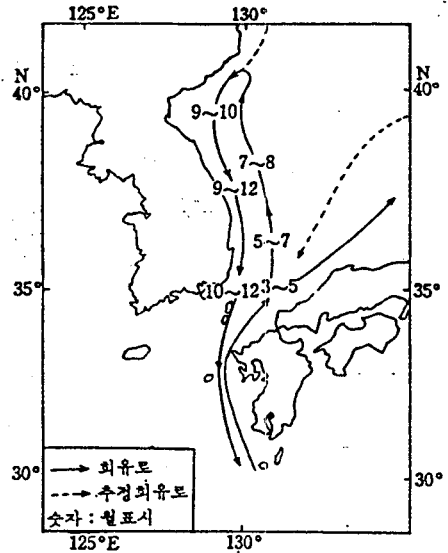
18)
 <그림 2-5> 살오징어의 월별 지방별 平均漁獲量

이들은 9월에는 성숙하고 南下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南下經路는 遠海를 거치며 沿岸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秋分경이고, 이것들은 對馬島 近海에서 11월경까지 어획된다.

(2) 정어리

정어리는 純沿岸性 魚族이며, 外洋으로는 별로 나가지 않는다. 季節的으로 南北回游하며, 봄~여름에는 低緯度の 高溫域으로부터 高緯度の 低溫域으로 이동하면서 索餌하고, 가을~겨울에 高緯度에서 低緯度로 이동하면서 越冬·産卵한다.

정어리의 漁場은 日本 近海에서는 대체적으로 産卵場과 일치하나, 韓國 近海에 오는 것은 索餌回游이므로 索餌場과 일치한다. 韓國 近海에서는 1932~38년에 索餌期의 群이 東海岸 일원, 특히 咸鏡道 일원에서 대량 어획되었으나, 그 후 전체적인 資源量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來游量이 줄어, 거의 어획이 전무하다가 1973년 경 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림 2-6> 정어리의 分布·回游 및 漁場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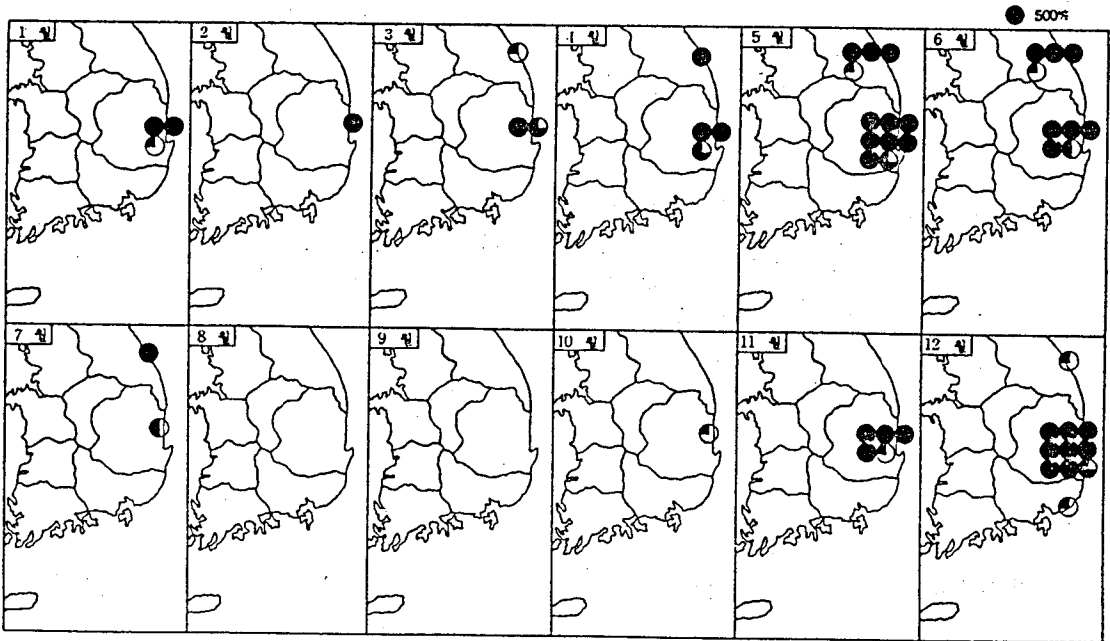
1934~1941년 韓國의 정어리 漁獲量은 年平均 90만M/T을 넘었는데, 이 때는 주로 旋網으로 어획되었으며, 주 어장은 咸鏡北道이고, 主漁期는 10~11월이었다.

정어리는 12월~3월 韓國의 東南海域, 日本 九州의 西北海域에서 越冬하고, 4~9월에는 暖流를 따라 韓國 東海를 北上回游하여 沿海州에 이르며, 10~12월에는 南下回游하여 越冬海域에 이른다. 韓國 東海의 暖流系는 外海쪽으로 북상하기 때문에 北上回游期에는 魚群도 外海쪽으로 널리 분산하여 회유하므로 北上回游期에는 群集度가 낮아 어획량이 적다.

그러나 南下回游期에는 沿海州에서 형성된 寒流가 咸鏡北道 東北쪽 外海로 南下하여 暖流를 沿岸쪽 표층 20~30m 깊이로 압박하므로 어군은 이 暖流와 함께 沿岸의 表層에 밀집된다. 그러므로 성어기인 10~11월에 咸鏡北道 漁場에서만도 總漁獲量의 약 반이 어획되었던 기록이 있다.

(3) 공치

공치는 멸치나 정어리 같은 것 보다는 適水溫이 약간 낮으나 기본적으로는 暖流性魚族이며, 韓國近海에서는 거의 東海에서만 잡힌다. 공치의 越冬場은 表面水溫이 10℃ 이상되는 東海南部海域, 위도로는 북위 35~36° 이남의 大韓海峽에서 日本의 九州南北部に 걸치는 해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7> 공치의 월별·지방별 平均漁獲量¹⁸⁾

그러다가 對馬暖流의 세력이 강해지고 東海의 表面水溫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北上하는데 4~5월에는 대체로 休戰線 근처까지 이르고, 7월에는 北은 타타르海峽에서 南은 休戰線 근처까지만 분포하나, 9월부터 다시 南下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거의 越冬場에 이른다.

공치는 韓國에서는 流刺網으로 잡는 것이 대부분인데, 漁期는 産卵과 北上을 시작하는 5~6월의 봄漁期와 越冬場에 접어드는 11~12월의 겨울 漁期로 갈라진다. 최근에는 資源의 감소로 漁獲量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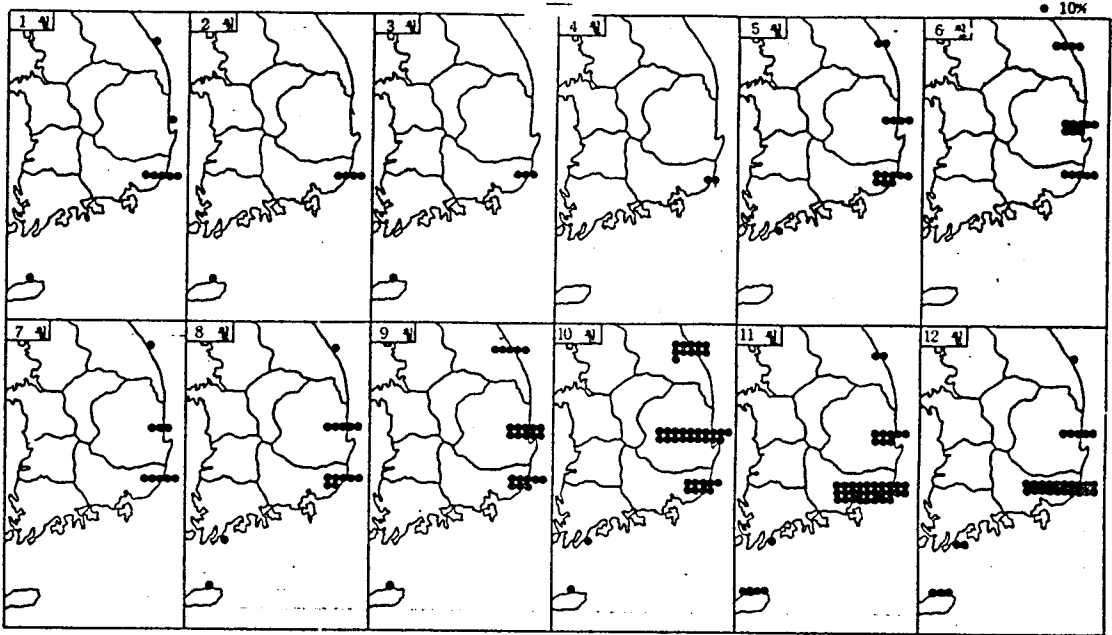
(4) 방어

방어는 주로 韓國과 日本 近海의 黑潮流域, 또는 그 支流의 영향을 받은 溫帶海域의 沿近海에 분포하며, 다른 해역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방어는 계절에 따라 비교적 광범위하게 南北으로 回游하는데, 그 回游路는 연안에 가까우며, 또 해마다 같은 시기에는 거의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北上回游는 자란 것이나 어린 것이나 모두 索餌回游이나, 南下回游는 자란 것은 産卵回游이고, 어린 것은 季節回游에 따른 索餌回游이다.

韓國産 방어의 主産卵場으로서는 日本의 五島列島 근방으로 알려져 있고, 産卵期는 4~5월이나, 이 밖에 東支那海 남부에서도 産卵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韓國에서는 주로 定置網으로 어획하며,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運用 漁具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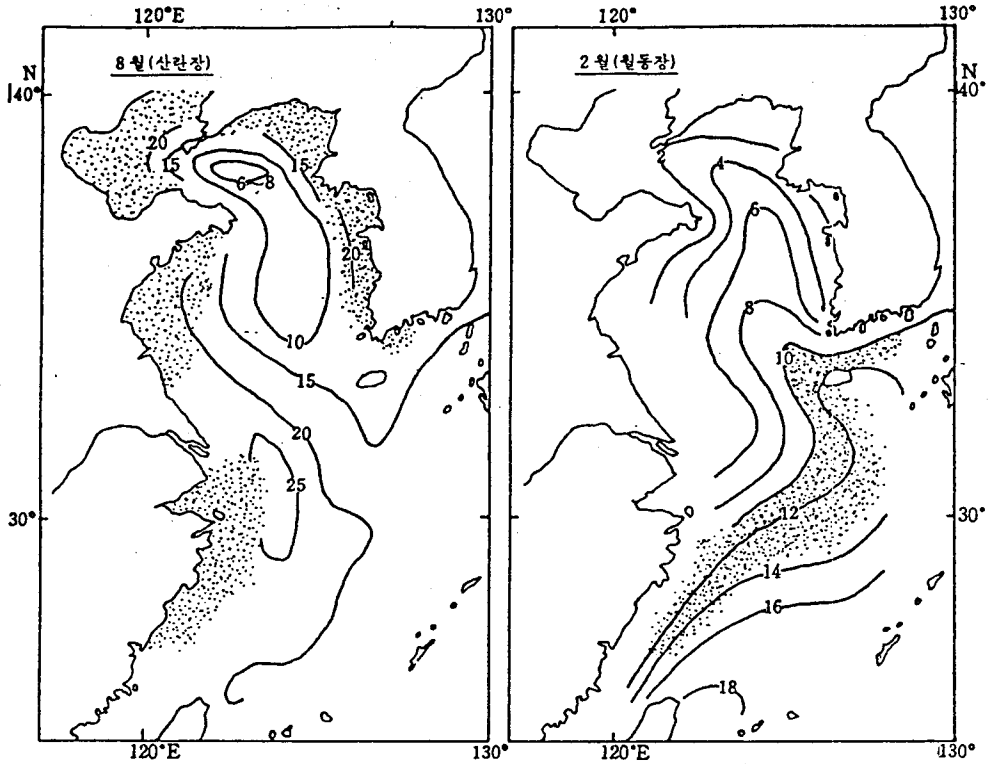


〈그림 2-8〉 방어(18)의 월별·지방별 平均漁獲量

C. 西海區産 底棲魚類

西海區 일원은 겨울이 되면 上·下層이 고루 냉각되므로 대부분의 底棲魚類는 이를 피하면서 南下하여 底層水溫 10~15°C 되는 濟州道~台灣 사이의 띠 모양의 海域에서 越冬하며, 봄철이 되어 沿岸水溫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中國과 韓國의 沿岸일대, 나아가서는 渤海灣으로까지 北上하면서 産卵한다. 따라서 이 越冬場과 産卵場을 왕복하는 가을~봄, 겨울~여름 사이가 回游期가 된다.

이와 같은 回游經路를 가지는 魚種은 조기, 갈치, 달강어, 가자미, 넙치, 대하새우 등 西海區産 底棲魚類 대부분이며, 다만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림 2-9> 黃海·東支那海의 海底水溫과 底棲魚族의 分布(숫자는 수온¹⁸⁾°C)

(1) 조기류

黃海·東支那海에 분포하고, 東支那海에서 월동하는 참조기는 그 回游 經路에 따라 대략 韓國 西海岸系群, 渤海灣系群, 中國 山東半島南部系群, 揚子江南部系群으로 나뉜다.

그 중 韓國 西海岸系群의 主越冬場은 濟州島 서남방 32~35° N, 124~126° E의 海역이나, 봄이 되면 東支那海의 暖流勢力을 따라 北上하기 시작하여 4월 중순에 黑山島근해에 이르러 일부가 産卵하기 시작하고, 5월

중순에 主産卵場인 延平島 근해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産卵한다.

産卵을 마친 어미는 6월 이후에도 北上을 계속하거나 外海로 이동하고, 9~10월에 수온이 낮아지면 산발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10~12월에 越冬場에 이른다. 이와 같은 回游經路는 月別, 地方別 漁獲量의 分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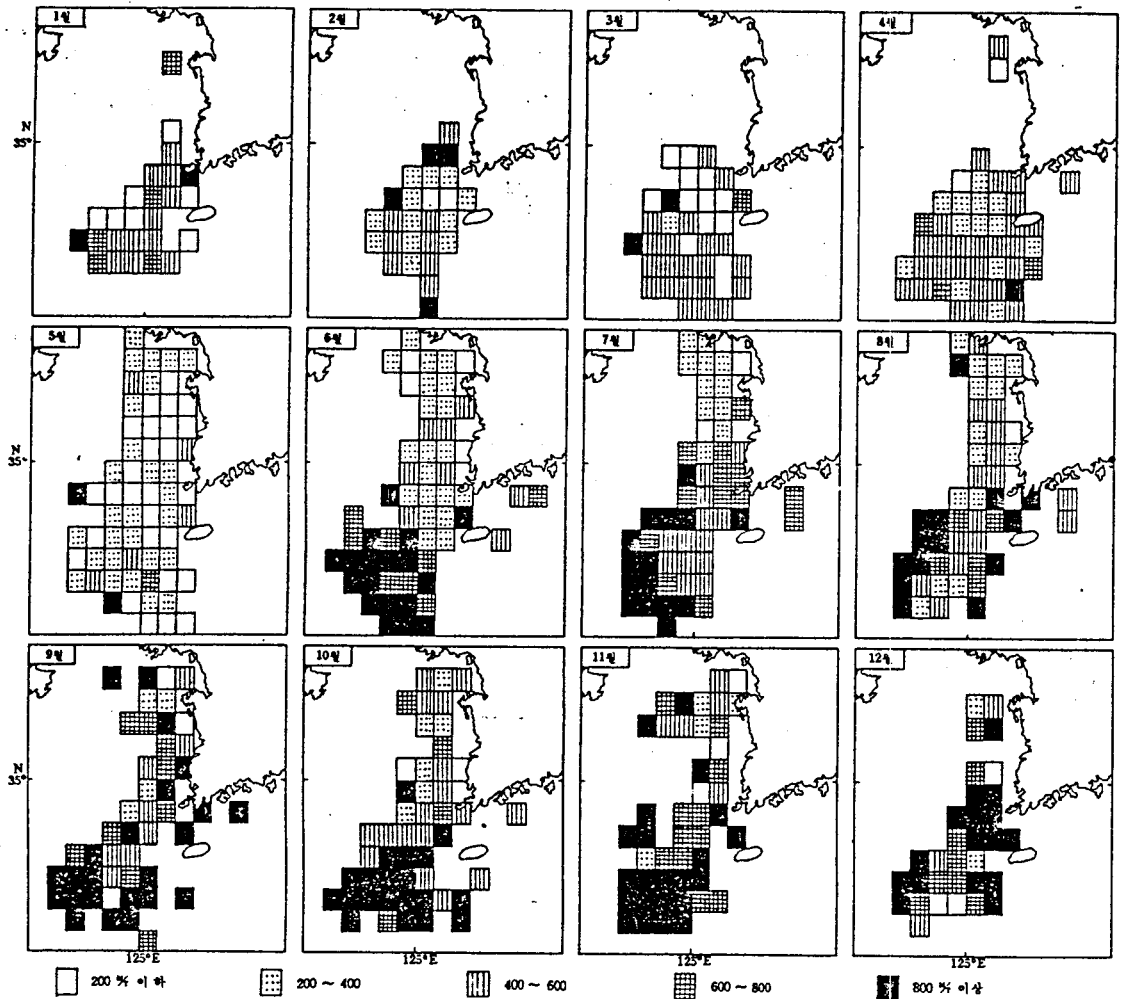
(2) 갈치

黃海 南部나 東支那海에서 越冬하는 갈치는 回游經路에 따라 대략 中國 山東半島 南部沿岸系群, 韓國 西·南海岸系群, 中國 揚子江流域系群으로 나뉜다. 그 중 韓國 西·南海岸系群의 主越冬場은 濟州島 서남방 $32\sim 33^{\circ} N$, $124\sim 126^{\circ} E$ 의 해역이며, 봄이 되면 東支那海의 暖流 세력을 따라 北上하기 시작하는데, 4월경에 黑山島 근해를 거쳐 5~6월에는 그 일부가 延平島 근해에까지 이른다. 南海岸을 따라서 회유하는 군은 5월에는 南海岸 全域에 분포하고, 9월에는 그 일부가 東海의 南部까지 北上하며, 10월이 되면 다시 越冬場으로 향하여 南下하면서 군이 분산된다.

月別, 地方別 漁獲量에서 보면 갈치는 南海岸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어서 조기류보다는 南쪽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3) 鮫鱧網漁場의 分布

조기, 갈치류는 機船底引網이나 트롤에도 어획되나 主業種은 鮫鱧網이므로 鮫鱧網漁業이 이루어진 海域을 經緯度 30분마다의 海區로 갈라서 月別 漁獲量을 비교해 보면 그림 2-10과 같다.



〈그림 2-10〉 鮫鱧網 漁獲量의 海域別·月別 變動¹³⁾

이것을 보면 1~3월의 主漁場은 濟州道 西南쪽의 $31\sim 35^{\circ} N$, $123\sim 126^{\circ} E$ 의 海域인데, 이것은 이 시기가 黃海産 鱈 魚族의 越冬期이고, 이 海域이 越冬場이기 때문이다.

4월에 들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현상이 크게는 변하지 않으나 漁場이 다소 사방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며, 5월이 되면 漁場이 주로 北쪽으로 확대되어 西海 沿岸 일원에 鮫鱧網의 漁場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이 시기가 조기류의 産卵期여서 沿岸 가까이에 농밀한 군을 형성하기 때문이며, 鮫鱧網漁業의 盛漁期에 접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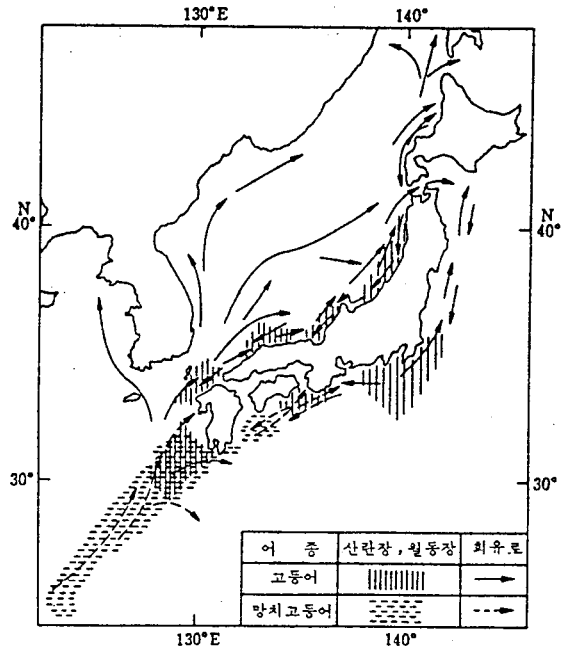
6월부터는 鮫鱧網漁業의 본격적인 盛漁期이며 漁場도 더 주변으로 확대되는데, 이것은 갈치가 沿岸에 産卵.索餌하러 오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다가 11월에 접어들면서 漁場은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고, 12월에는 濟州道 以東에서는 거의 조업하지 않으며, 완전한 越冬期가 된다.

D. 西海區産 浮魚類

대표적인 것은 고등어와 전갱이이며, 이들은 生態나 回游經路가 거의 비슷하여 다같이 旋網漁業의 주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전갱이는 거의 없고, 고등어가 주로 어획된다.

韓國과 日本 근해에 분포하는 고등어는 크게 對馬暖流系群과 太平洋系群으로 나뉘나 韓國漁船이 잡는 것은 주로 對馬暖流系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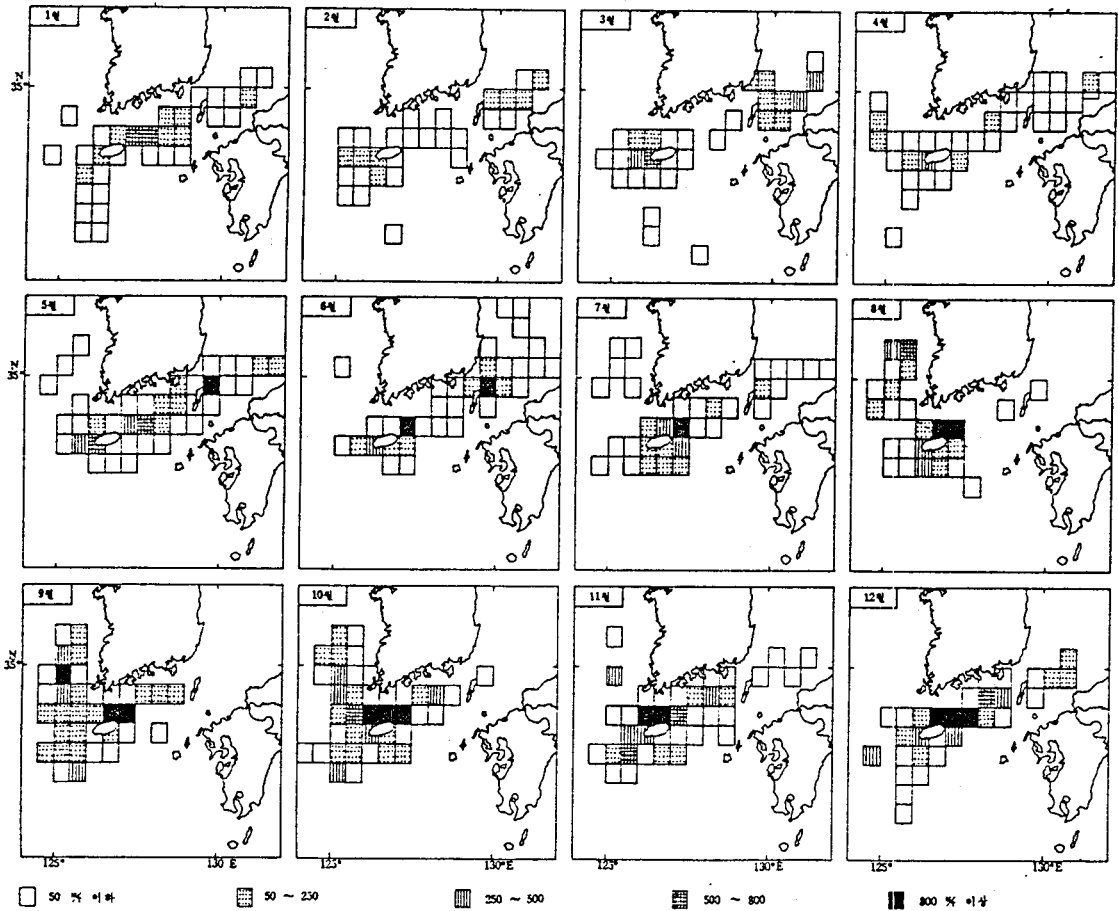
이 系群은 對馬暖流流域에 서식하는



<그림 2-11> 韓國近海에 있어서의 고등어의 分布¹³⁾

것이며, 다시 東海 中部以南에 분포하는 南方系群과 中部以北에 분포하는 北方系群으로 나뉘나, 양이 많고 선망의 주 어획대상이 되는 것은 南方系群이다.

南方系群은 東支那海에서 越冬하고, 여름철 對馬暖流의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北上하며, 韓半島의 西部를 거쳐 渤海灣으로 향하는 군과 東海로



<그림 2-12> 고등어 旋網漁場의 월별 변동¹³⁾

진입하는 군으로 나뉜다. 後者は 다시 韓國 東海岸을 따라 北上하는 군과 日本 北部海岸을 따라 北上하여 北方 系群과 혼합되는 군으로 나뉜다.

旋網으로 어획되는 고등어의 漁場分布를 10년간의 통계에서 보면 漁場이 형성되는 것은 대체로 $31^{\circ} N$ 이북~ $36^{\circ} N$ 이남, $125^{\circ} E$ 이동~ $131^{\circ} E$ 이서의 海域이며, 대체적으로는 濟州道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60마일 이내, 그 중에서도 濟州道 북부해역이 다른 해역보다 좋은 어장이 된다.

E. 南海産 浮魚類

대표적인 것은 멸치와 쥐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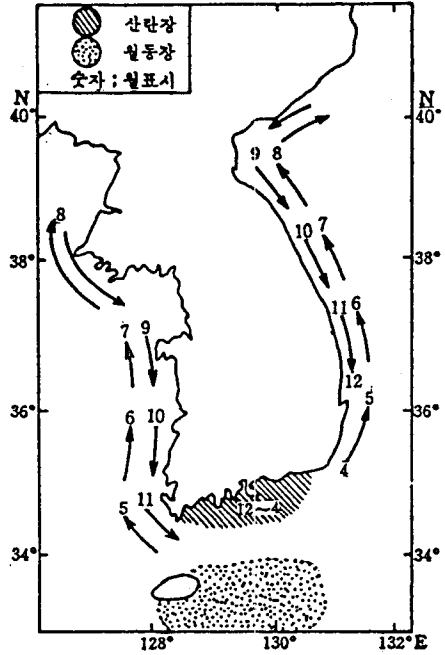
(1) 멸치

韓國産 멸치의 越冬場은 초어기의 어미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流刺網의 조업위치, 겨울 여기에 있어서의 각종 어업의 漁場, 水溫, 鹽分 등의 海況, 멸치의 生態 등에서 미루어, 대략 겨울철의 水溫이 $14\sim 15^{\circ}C$ 이상 되는 韓國 南部海域으로 추정되며, 이 철이 海域의 水溫이 표면과 저층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서 미루어, 비교적 깊이까지 분산하여 월동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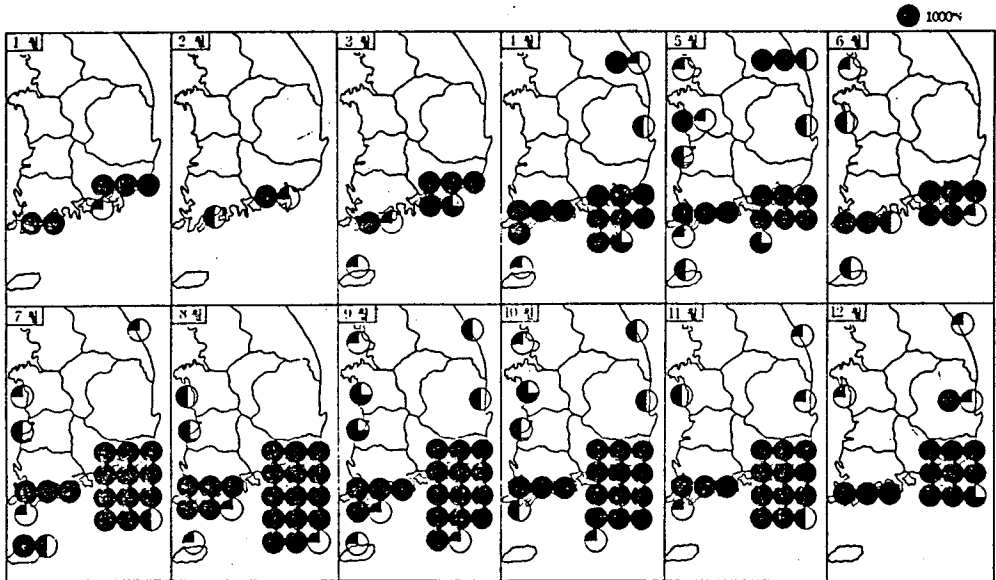
그러다가 3월경부터 黑潮의 세력이 차차 우세해지고 南海岸의 沿岸水溫이 $14\sim 15^{\circ}C$ 로 높아짐과 더불어 北上하기 시작하여, 주로 5월경부터 釜山~麗水 사이의 沿岸에서 産卵을 시작하고, 産卵을 마친 어미는 黑潮의 北上에 따라 東海로 가는 군과 西海로 가는 군으로 갈라져서 北上한다.

北上의 한계는 東海北部나 西海北部에 있어서의 여름철의 表面水溫이 모두 20°C 이상 되는 것에서 미루어 東海로 가는 군은 沿海州까지, 西海로 가는 군은 渤海灣 근해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다가 9월경부터 東海쪽에서는 北韓寒流의 세력이 강해지고, 西海쪽에서는 沿岸水溫이 하강하기 시작하면 비교적 水溫이 높은 沿岸을 따라 南下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림 2-13> 멸치 回游 推定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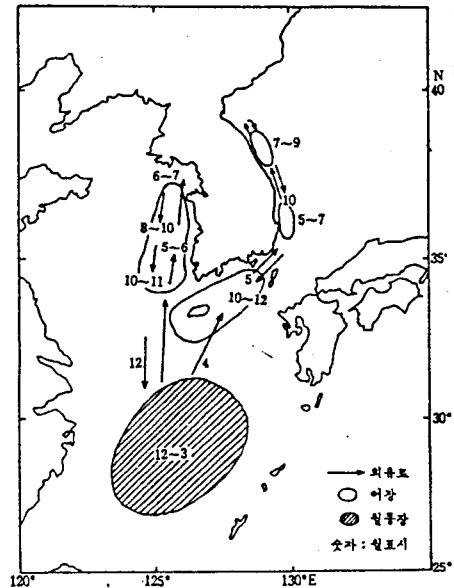
<그림 2-14> 멸치의 월별·지방별 平均 漁獲量

한편, 南海岸에서 가을철에 産卵·孵化된 稚·仔魚群은 內灣의 따뜻한 水溫과 풍부한 먹이에 의하여 성장하고, 일부는 약간 北上하는 것도 있는 것 같으나, 대부분은 이 해역에서 성장하여 越冬場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그림 2-13 및 14).

(2) 말쥐치

말쥐치도 기본적으로는 겨울에 南下하여 越冬하고, 봄~여름에 北上, 接岸回游하면서 産卵한다.

말쥐치의 漁場은 겨울에는 慶南 일원부터 東支那海 東部海域에 걸쳐 형성되나, 主群은 濟州道 西部의 東支那海 北東部, 水溫 12~13°C 되는 곳에서 越冬하고, 5~6월경부터 東海岸과 西海岸을 따라 북상하면서 産卵한다. 그리하여 6~9월에는 濟州~木浦를 잇는 선 이서의 濟州道~群山에 이르는 연안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러다가 10월 이후 沿岸水溫이 하강하면 南下를 시작하여 主群은 34° N 이남의 해역에서 越冬하는 것 같다(그림 2-15).



<그림 2-15> 말쥐치의 回游와 漁場 및 漁期¹⁸⁾

III. 韓國 水産業의 現況과 展望

1. 韓國의 水産物 基礎需要와 供給 現況

韓國에 있어서의 水産物은 直接食糧, 間接食糧, 外資獲得源의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直接食糧으로서의 수요이다.

먼저 直接食糧으로서의 魚貝類의 基礎需要量은 成人 體重 1kg당 1日의 蛋白質需要量을 1.2g으로 보고, 그 중 1/3은 動物性を 섭취해야 하며, 國民의 平均體重을 40kg, 魚貝類 可食部の 重量比를 55%, 蛋白質 含有率을 18%, 實質利用率(폐기분을 제외한 실제 이용율)을 70%, 動物性 蛋白質 供給源 중 魚貝類의 占有率을 60%, 人口를 B명이라 하면 年間全國基礎 需要量 D(kg)는

$$D = 50 \times B$$

이다. 여기서 최근의 人口 B에 따르는 D를 계산해 보면 <표 3-1>과 같은데,

<표 3-1> 韓國의 魚貝類 基礎需要量과 供給量의 비교

연 도	인구(백만)	기초 수요량(천M/T)	공급량(천M/T)
1984	40.6	2030	1796
1985	41.0	2050	1880
1986	41.6	2080	2159
1987	42.1	2105	2131

이것을 보면 1985년까지는 供給量이 基礎需要量에 이르지 못했으나 1986년부터 비로소 基礎需要量을 제대로 供給하기에 이른 셈이다.

그런데 이 基礎需要量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위의 계산은 質의 문제는 전혀 도외시하고 量의 문제만 거시적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國民所得의 증대에 따라 야기되는 質의 문제는 다시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오직 輸出用으로만 인식되었던 다랑어(참치)같은 高級魚種이 이제는 國內에서 더 많이 소비되고 있고, 오징어의 國內時勢는 國際時勢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등의 현상을 나타내어 앞으로는 高價魚種의 輸入이 증대할 추세에 있다.

〈표 3-2〉 20년간의 韓國의 水産物 需給實績²⁰⁾
(공급 및 소비의 단위 : 천M/T)

연도	공 급							소 비			인 구 (백만)	어패류 1인당 소 비 (kg)
	어패류 생산			해조류 생 산	생산량 계	수입	합 계	국 내		수 출		
	연근해	양식	원양					어패류	해조류			
1978	1,286	243	566	259	2,354	54	2,408	1,494	217	697	37	40.4
1979	1,352	327	486	257	2,422	55	2,477	1,463	226	788	38	39.0
1980	1,313	322	458	317	2,410	41	2,451	1,438	317	696	38	37.7
1981	1,468	358	542	444	2,812	48	2,860	1,684	445	731	39	43.5
1982	1,429	329	528	361	2,644	61	2,705	1,623	361	721	39	41.3
1983	1,443	344	615	391	2,793	66	2,859	1,769	391	699	40	44.3
1984	1,476	345	658	431	2,910	84	2,994	1,796	434	764	41	44.3
1985	1,449	443	767	444	3,103	91	3,194	1,880	448	866	41	45.8
1986	1,694	480	929	557	3,660	127	3,787	2,159	401	1,236	42	51.7
1987	1,468	525	882	457	3,332	427	3,759	2,131	293	1,335	42	50.6

한편 養殖業, 畜産業의 발달은 間接食糧, 즉 飼料로서의 수요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外貨獲得源으로서의 수요도 해마다 늘어 1986년에는 總生産量 366만M/T의 37.7%인 124만M/T이, 1987년에는 330만M/T의 40%인 136만M/T이 수출되었고 그 需要도 늘고 있다.

한편 魚貝類의 최근의 生産量을 보면 1986년에는 一般海面漁業에서 169만M/T, 養殖業에서 48만M/T, 遠洋漁業에서 93만M/T, 計 310만M/T이었으나, 1987년에는 그것이 각각 147만M/T, 53만M/T, 88만M/T으로 計 287만M/T이어서 前年對比 7%정도 감소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增産展望은 결코 밝지 않다.

2. 2000年代 初의 水産物 需要와 供給 展望

A. 需要 展望

韓國의 앞으로의 水産物 需要·供給을 展望하기 위한 기준年度를 2000년대 초로 잡고, 또 水産物의 需要를 추산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先進國 중 立地條件이나 食生活 패턴이 우리와 비슷한 日本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선 韓國과 日本의 魚貝類의 연간 1인당 消費量을 비교해 보면(표 3-3) 韓國은 1986~87년에 50kg 수준이었는데 비하여 日本은 1984년에 100kg, 1985년에는 110kg을 넘어 韓國의 2배 이상이었다.

〈표 3-3〉 韓國과 日本의 국민 1인당 연간 魚貝類 消費量 比較

연도	한 국			일 본		
	소비량 (천M/T)	인 구 (백만)	1인당 소비 (kg)	소비량 (천M/T)	인 구 (백만)	1인당 소비 (kg)
1984	1,796	40.6	44.3	13,070	120.0	100.6
1985	1,880	41.0	45.8	13,710	121.0	113.3
1986	2,150	41.5	51.7			
1987	2,131	42.1	50.6			

그런데 최근에는 韓國人の 食生活패턴도 日本人의 그것에 많이 접근하여 水産物에 대한 기호가 고급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韓·日間の 個人當의 消費量의 차이가 기본적으로는 經濟力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가정하고, 2000년대 초에는 韓國의 1인당 GNP도 지금의 日本의 그것에 접근하고 따라서 魚貝類의 1人當 消費量도 지금의 日本의 水準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가정하면 100kg 정도로 보아야 할 것 같고, 人口는 5000만으로 본다면 2000년대 초의 魚貝類의 需要量은 500만M/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B. 國內漁業에서의 供給展望

(1) 一般海面漁業

韓國의 部門別 生産量 중에 가장 많은 것이 一般海面漁業生産인데, 이 부분의 과거 20년간의 實績을 보면(표 3-4) 漁船勢力이 隻數로서는 5만

21)

〈표 3-4〉 一般海面漁業 및 養殖業부문 20년간 實績比較
(배율 이외의 숫자는 천 단위)

부 문	항 목	1967년	1987년	배 율
一般海面 漁業	漁 船 척 수	53	53	1.0
	총 噸 수	244	452	1.9
	馬 力 수	380	2690	7.1
	漁 場 面 積			2
	生 産 量	610	1526	2.5
養 殖 業	水 産 動 物	71	477	6.7
	水 産 植 物	26	400	15.4

3천척 정도로 큰 변동이 없으나 총톤수는 24만 4천톤에서 45만 2천톤으로 약 2배, 馬力數는 38만 마력에서 269만 마력으로 약 7배로 늘어났으며, 또 漁具, 漁法, 漁撈裝備 등이 획기적으로 개량되었고, 漁場의 面積도 2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從事者의 教育水準도 급성장한데 비하여 漁獲量은 2배로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物量的·非物量的인 漁獲努力量의 증대를 고려한다면 增産되었다고 볼 수 없는 양이며, 최근에 와서는 도처에서 過度漁獲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업계 스스로가 漁獲努力量, 특히 船幅量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우기 韓國近海의 漁場은 中國, 日本, 北韓과도 공동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바, 이들 나라들이 한결같이 近海漁業生産의 증대에 노력하고 있어서 資源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韓國의

生産量은 1981년대에 140만M/T을 넘은 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의 생산 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00년대 초에 가서도 160만M/T대를 크게 웃돌기는 곤란할 것 같으며, 최대로 크게 잡더라도 200만M/T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養殖業

養殖業부문은 최근 政府가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라는 기치 아래 人工魚礁의 투입, 人工種苗生産의 촉진 등으로 資源增大를 꾀하고 있고, 또 遺傳工學的方法에 의한 高成長魚種의 개발, 高價魚種의 高密度飼育技術의 개발, 內水面의 高度利用 등이 연구되고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이기는 하나, 그 반면에는 養殖適地의 埋立과 汚染, 海面의 富營養化에 의한 각종 病蟲害의 발생 등 沮害要因도 증대하고 있어서 낙관할 수는 없으며, 2000년대 초에 가서 잘해 보았자 지금의 生産量의 2배 수준, 즉 100만M/T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이 추측된다.

C. 海外漁業에서의 供給 展望과 海外依存度

(1) 供給展望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三面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은 海外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우리 遠洋漁業의 과거 20년간의 實績을 보면(표 3-5) 1970년대에 겪었던 油類波動에 의한 損益分岐點의 상승, 沿岸國들의 排他的 經濟水域 선포로 인한 漁場의 상실 등으로 한동안 곤경에 처했었으나 그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고 19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21)

〈표 3-5〉 遠洋漁業 부문 20년간 實績比較
(척수는 실수, 그 외는 천 단위)

부 문	항 목	1967년	1977년	1987년
다 량 어	漁船 척 수	152	525	338
	톤 수	34	152	126
	마력수	83	445	363
	生産 量	38	172	146
트 물	漁船 척 수	54	279	230
	톤 수	8	144	140
	마력수	20	361	353
	生産 量	2	423	586
기 타	漁船 척 수			142
	톤 수			112
	마력수			208
	生産 量			150
計	漁船 척 수	206	804	710
	톤 수	42	296	378
	마력수	103	806	924
	生産 量	40	533	882

漁場의 개발, 漁法의 다변화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1986~1987년에 90만 M/T 전후의 생산을 올리는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漁業에 대한 압력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베링海 멧태漁場에서의 쿼터量 감소는 그 타격이 매우 크다. 천만다행으로 蘇聯과의 관계 개선으로 蘇聯 管轄水域內에서의 入漁가 확대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北太平洋 오징어 漁場에서의 美國의 操業制限 움직임, 포클랜드 漁場이나 아프리카 沿岸漁場에서의 操業規制의 강화 등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다급하면 南水洋에서의 크릴漁業의 확대 등을 통하여 量的으로는 어떻게 충당이 가능할지 모르나 GNP의 상승에 따른 人件費의 상승과 高級技術人力의 이탈 현상, 質的選擇水準의 상승 등으로 낙관할 수는 없으며, 큰 장애요인 없이 순조롭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2000년대 초의 生産量은 100만M/T을 크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표 3-6> 韓國의 魚貝類 需給實態 및 海外依存度
 (단위:천M/T)

항	목	1986년	1987년
供 給 量	生産量	3103	2726
	· 沿近海	1693	1471
	· 養 殖	480	481
	· 遠 洋(A)	930	774
	輸 入 量	117	346
	· 原資材用 · 內需用(B)	104 13	112 234
	合 計	3220	3072
消 費 量	國內消費量	2775	2540
	輸 出 量	445	532
	· 沿近海産 · 遠洋産(C)	219 226	282 250
海外依存度	海外依存量(A+B-C)	717	758
	海外依存度 (合計에 대한 %)	25.8	29.8

〈표 3-7〉 2000년대 초에 있어서의 韓國의 魚貝類
需給展望

(단위:천M/T)

구 분	산 출 근 거								
需 要	人口 5천만 X 100kg = 5000								
供 給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一般海面漁業</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2000</td> </tr> <tr> <td>養 殖 業</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td> </tr> <tr> <td>海 外 漁 業</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td> </tr> <tr> <td>輸 入</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1500</td> </tr> </table>	一般海面漁業	1500~2000	養 殖 業	1000	海 外 漁 業	1000	輸 入	1000~1500
一般海面漁業	1500~2000								
養 殖 業	1000								
海 外 漁 業	1000								
輸 入	1000~1500								
海外依存	$(2000 \sim 2500) / 5000 = 40 \sim 50\%$								

(2) 海外依存度

그렇다면 2000년대 초의 需要量 500만M/T에 대한 供給이 문제인데, 우선 國內漁業에서의 供給량을 다소 크게 보아 一般海面漁業이 150~200만M/T, 養殖業이 100만M/T, 計 250~300만M/T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200~250만 M/T은 海外漁業에 의존하거나 輸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水産業의 海外依存度は 현재 30%이하이나 2000년대 초에는 적어도 40%, 크게는 50%선으로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3-6 및 3-7).

그런데 그 중 100만M/T 내외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遠洋漁業에서 생산 되고 또 輸出이 완전히 중단된다 치더라도 나머지 100~150만M/T은 輸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가기 위한 基本方向으로서는 水産物을 海外에서 우리 손으로 생산하여 導入하는 方向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方法이 없다는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3. 海外水産業의 새로운 展開方向

다가오는 時代에 있어서 水産業分野에서 韓國의 海外活動의 方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바와 같은 遠洋漁業, 즉 大型의 漁船이 入漁料를 내고라도 他國의 管轄水域內에 入漁하거나 혹은 公海에서 하는 漁業을 지속·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漁業은 이제는 資源保有國들이 水産資源의 重要性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여 資源의 自體開發과 利用을 도모하고 있어서 入漁料支拂形式의 事業은 점차 줄어들고 合作事業形式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따라서 앞으로 水産業分野에서의 海外活動의 基本的 展開方向은 지금까지와 같은 遠洋漁業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 國內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각종 水産業을 해외에서 전개한다는 의미에서의 「海外水産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相對國의 실정에 알맞은 漁業·養殖·加工部門의 발전은 물론, 그것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분야들, 예를 들면 流通, 造船, 機關 등의 분야도 참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次産業, 3次産業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차원에서의 활동은 매우 미미하고 또한 그러한 정보의 蓄積도 안되고 있다. 앞으로는 可能性이 있는 國家를 선정하여 各種 情報를 수집·분석하고, 共同開發의 可能性, 手段方法, 效率性 등을 검토해 가야 할 것이며, 역시 地理的으로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水産業分野에서 北韓과의 사이에 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느나라와의 交流보다도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IV. 北韓 水産業의 現況과 展望

1. 北韓海域의 特性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海洋의 일반적인 特性은 앞에서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北韓이 가지고 있는 海洋의 特性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北韓이 가지고 있는 海洋條件의 特性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東海區와 西海區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A. 東海區

東海區는 山地가 海岸線에 가까와 경사가 심하고, 200m 等深線은 陸岸에서 멀어보았자 10수마일밖에 안되는 곳에 있으며, 1000m 等深線도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아서 大陸棚이 아주 좁다.

그러나 이 海域은 타타르海峽을 통하여 오호츠크海에 접해 있고, 거기에서 흘러 들어오는 리만海流와 黑龍江, 豆滿江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沿岸水가 혼합된 北韓寒流는 暖流系에 비하여 營養鹽이 풍부하고, 또 寒流系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特性이 魚族의 種類數는 적으나 한가지 魚種의 資源量은 매우 크며, 또 그것이 대부분 底棲魚族이라는 것이다.

北韓寒流系에서도 이 현상은 다를 바 없어 겨울철에는 명태, 대구, 청어, 연어 등의 寒流性 魚族이 풍부하며, 특히 명태는 그 資源量이 많기 때문에 어획되는 海産魚의 8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며, 漁法도 트롤이 주로

쓰이고 있어서 단순하나 漁期가 11~2월의 4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北韓쪽의 東海區의 海況特性은 여름철에는 南으로부터 對馬海流가 거의 北端까지 北上하나, 밑에는 寒流系가 받치고 있어서, 水溫躍層이 水面下 불과 몇 m 아래에 있어 暖流性 魚族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된다. 한편, 가을부터 勢力이 강해지는 寒流系가 때로는 暖流系를 陸岸으로 밀어붙여 沿岸쪽에 魚群의 濃度가 짙어져 아주 좋은 漁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海域에서 과거 정어리의 경이적인 어획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와같은 海況의 특성에 기인하며, 그 외 오징어, 콩치 등의 浮魚類는 모두 이와같은 海況의 영향을 받는다.

B. 西海區

西海區는 海岸線 가까이 높은 산이 없고, 평지가 많으므로 인접한 海洋의 水深이 얕고 海岸線이 매우 복잡하여 東海區와는 대조적이며, 北韓의 관할하에 있는 海域의 最大水深이 80m밖에 되지 않는다.

西海區에는 본격적인 寒流系는 없고, 北上한 黃海暖流가 北쪽에서 냉각되어 韓國沿岸과 中國沿岸을 따라 南下하고 있을 따름이나, 겨울철에는 大陸性高氣壓帶의 영향을 받아 일대가 5~6°C 이하의 찬 바다가 된다. 따라서 주로 暖流産인 西海産 魚族은 제주도 근처로까지 南下하여 越冬하므로 이 일대는 겨울철에는 거의 漁業이 성립되지 않는다.

西海를 대표하는 魚種은 조기이며, 黑山島부터 渤海灣까지가 모두

産卵場이 되므로 봄漁期에는 漁業이 활발하다. 漁法은 일찍부터 鮫鱧網이 쓰여왔고 일부 機船底引網이나 트롤도 있을 것 같으나 확실치 않다.

또 沿岸 일대에서는 潮流가 매우 강해서 垂下式이나 가두리式의 養殖施設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며, 다만 干潟地를 이용한 貝類養殖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2. 水産政策 및 管理

A. 水産政策

北韓도 韓國과 마찬가지로 水産物을 動物性蛋白質의 重要 供給원으로 삼고 있음은 물론, 重要 外貨獲得源으로도 삼고 있어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를 主要 輸出産業品目으로 설정하여 生産제고에 주력하여 왔으며, 水産物 生産 極大化 및 供給 圓滑化를 위해 이 분야의 基本政策 目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沿近海 漁業을 중심으로 하면서 遠洋漁業까지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水産物 生産高를 높인다.

둘째, 水産業의 科學化를 적극 추진하여 각종 漁撈裝備 및 漁撈方法을 多樣化·大型化·現代化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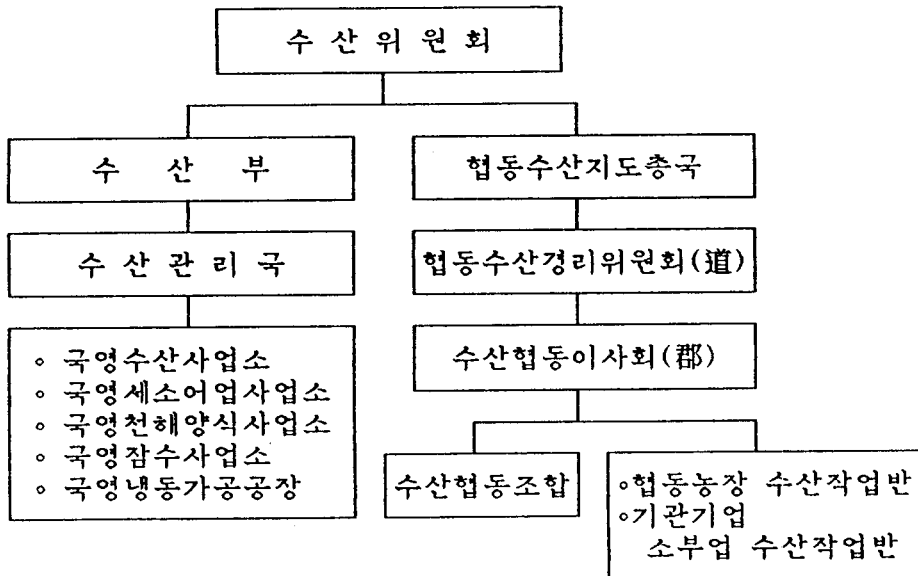
셋째, 淺海養殖事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그 生産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水産物 生産量 중 養殖量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되도록 한다.

네째, 水産物 加工事業을 강화하여 水産物 生産基地부터 郡單位까지 冷凍工場과 貯藏庫를 건설함으로써 원활한 水産物 供給體系를 확립하여 水産物 供給의 季節的 制約性을 극복한다.

B. 水産管理

水産業의 管理運營體系는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1958년 10월 이후 中央執權的 指導體制를 기본으로 國營 水産事業所와 水産協同組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生産組織體系 이외에 각 機關·企業所에서 직접 漁撈作業을 하는 副業作業班, 해안에 위치한 協同農場에 편성된 水産作業班 또는 分組 등도 生産作業에 참여하고 있다.

<표 4-1> 北韓의 水産指導體制²⁾



<표 4-2>

北韓의 道別 國營事業所現況²⁾

道 別	사업소수	수산사업소 및 잠수사업소
함경북도	14	서수라, 웅기, 나진, 낙산, 언천, 청진, 고말산, 명천, 어대진, 명간, 무수단, 사포, 김책, 성남.
함경남도	19	용대, 단천, 증산, 이원, 유성, 차호, 원평, 신창, 양화, 신포, 봉대, 육대, 흥원, 전진, 경포, 삼호, 서호, 퇴조, 가진.
강 원 도	8	문천, 송도원, 원산, 고저, 통천, 두포, 장전, 염주.
평안북도	7	신의주, 용암포, 철산, 광산, 정주, 온전, 염주.
평안남도	5	문덕, 와우도, 온천, 남포, 한천.
황해남도	8	몽금포, 구미포, 웅진, 강령, 해주, 평화, 평남.
합 계	61	

특히 1978년 10월 江原道 및 咸鏡南道 水産物 生産에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열린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擴大會議을 통하여 기존의 水産業 體系를 대폭 개편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中央의 水産委員會와 그 산하의 協同水産指導總局을 비롯하여 道單位 協同水産理事會를 신설한 것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다.

이는 종래 國營水産部門에서만 치중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한 시되어 오던 協同水産部門을 보다 강화하고, 水産業分野의 指導·管理面에서 二元化體制를 도입하여 未開發分野이던 沿近海 小規模 零細漁業을 協同水産 管理體系의 강화를 통하여 적극 개발함으로써 潛在水産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1981년말 현재 國營인 水産事業所 및 潛水事業所를 61개, 水産協同組合을 약 230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水産業 基盤造成

A. 漁船勢力

北韓의 漁船勢力은 총 3만 6백척 정도이고 그 중 動力船이 2만 1천척 정도라고 하나 漁船의 크기나 馬力數를 가늠할 수 있는 資料는 구할 수가 없으며, 漁船의 隻數만으로써 비교하면 韓國의 총 9만 9천척, 動力船 7만 8천척의 30%이하의 수준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자체 건조를 하거나 또는 外國으로부터 中古漁船을 도입하거나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大型船의 확보에 노력하여 1980년 현재, 1000톤 이상의 大型船을 13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는 10,000톤급 工母船이 2척이나 되는 등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표 4-3).

〈표 4-3〉 北韓의 大型漁船 保有現況 (1980년 현재)²⁾

선박명	톤수	선종	건조조선소	건조연도	비고
평화호	3,000	냉장운반선	불가리아에서 도입	1961개조	
백두산호	11,000	가공공모선	화란	1965도입	
대성산호	3,500	냉장운반선	남포조선소	1967신조	
용악산1호	3,700	선미트롤선	청진조선소	1980 "	
은파산호	3,750	"	"	1969 "	
금강산호	7,050	냉장운반선	화란	1969도입	
봉화산호	5,000	"	청진조선소	1970신조	
모란봉호	5,000	"	"	1972 "	
백마산호	1,350	"	용암포조선소	1972 "	
청봉호	5,000	"	청진조선소	1973 "	현재이란조업중
창광산호	3,750	선미트롤선	"	1974 "	
반룡산호	3,750	"	신포조선소	1975 "	
용남산호	14,000	가공공모선	원산조선소	1980 "	

漁業技術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련의 技術들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트롤漁法은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3750톤급의 표준 船尾式 트롤船을 개발하여 東海의 명태漁場에 투입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며, 명태의 어획은 전적으로 이 漁法에 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西海는 鮫鱧網이 주종이고, 그 외에 여러가지 漁法들을 같이 쓰고 있으나 規模나 技術水準은 두드러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또한 漁船의 帶港日數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年間 出漁日數 300일을 달성함으로써 漁獲能力을 제고시키기 위해 1976년 10월 元山船舶修理工場을 중심으로 「15일 工程表에 의한 船舶修理」體系가 강조되었다. 이는 종래 300일 出漁目標가 船舶修理期間이 적당 14일 이상이나 초과소요됨으로써 지켜지지 않았음을 감안, 船舶修理에 필요한 機關, 木材, 鋼材 등의 각종 비뚤한 자재를 한달분 이상 예비로 확보하고, 예비부품이나 엔진의 정비체제를 확립하여 漁船의 수리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자는 것이다.

B. 排他的 經濟水域의 宣布와 漁業協定の 締結

(1) 經濟水域의 宣布

北韓은 지난 1977년 6월 자체의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領海의 基線으로부터 200마일까지, 그리고 200마일 선을 그을 수 없는 水域에 대해서는 等距離中間線을 기준으로 하는 經濟水域을 中央人民委員會政令으로서 선포하고, 동년 8월 1일을 기하여

발효토록 했다. 이는 이 水域내에서의 排他的 管轄權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中共과 연결되어 있는 黃海에서는 等距離 中間線을 택하고 있으며, 이 水域內에서의 生物 및 非生物資源에 대한 自主權을 명시하였다.

이는 1976년 12월, 蘇聯이 經濟水域을 설정하고, 1977년 6월, 韓·日間에 大陸棚 協定이 비준되었으며, 1977년 7월, 日本이 200해리를 漁業水域으로 선포하는 등 周邊各國이 일련의 海域 保護措置를 한 것에 대응하여 對항 요건을 확고히 하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동년 8월 1일 人民軍 最高司令部 명의로 이 經濟水域을 보호하고 民族的 利益과 自主權을 軍事的으로 지키기 위하여 基線으로부터 50해리에 이르는 海域에 軍事境界水域을 설정하고, 그 水域內의 水上, 水中, 空中에서의 外國의 軍用船舶, 軍用航空機 등의 行동을 금지시켰으며, 民用船舶 (어로선박 제외) 및 航空機는 당사자간의 사전합의 또는 승인하에서만 航海 및 飛行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먼저 선포한 200해리 經濟水域의 발효와 관련,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海域의 範圍를 규정짓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對外 및 對南政策과 관련, 情勢發展에 적응하여 東·西海에서의 主權行事を 政治的·軍事的으로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2) 漁業協定の 締結

a. 對蘇協定

北韓과 蘇聯과의 漁業協力은 일찌기 1956년 蘇聯과의 사이에 「太平洋

1 西北水域의 水産資源利用에 관한 協定」이 체결된 것이 처음이고 그것에 의거하여 1961년부터 北韓漁船이 오호츠크海에서 北洋漁業을 영위해 왔는데, 이 漁業은 北韓의 遠洋漁業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北韓은 그 후에도 1967년에 蘇聯과의 長期經濟協力協定, 1974년에 10년간의 漁業協定을 체결하여 北洋漁業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

그러다가 蘇聯이 1976년 12월, 200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하게 됨에 따라 北洋漁業에 제약이 가해지고 北韓의 北洋漁業 操業隻數는 대형트롤 6척 및 중형어선 10척, 漁獲量은 연간 20만M/T으로 제한한다는 漁業協定이 1977년 7월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며, 同協定에 의거, 현재까지 매년 議定書를 체결하면서 시행준칙을 보완해 오고 있다(상세한 것은 V. 韓半島周邊水域에서의 國際漁業의 力學關係 참조).

b. 對日協定

北韓이 1977년 8월 東·西海에 200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함으로써 종래 이 海域에서 자유로이 漁業活動을 해 오던 日本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자 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北韓과의 漁業協力을 요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兩國間에 國交가 없기 때문에 政府間協定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北韓의 東海水産協同聯盟과 日本의 日·朝漁業協議會間에 民間次元에서의 漁業協力에 관한 暫定合意書가 1977년 9월에 평양에서 체결되었다.

同協定은 北韓의 50해리 軍事境界水域을 제외한 經濟水域內에서의 日本 漁船의 조업을 허용하고 相對側漁船의 安全操業 보장과 緊急救助要請에

대한 구호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日本은 北韓이 漁業技術, 漁具 및 機資材 등을 도입하는 데 협력한다는 것인데, 有效期間은 1977년 7월부터 2년으로 했다.

그러다가 1978년 同協定을 2년간 연장하는 과정에서 北韓이 日本의 漁業水域 (太平洋연안은 제외)에의 入漁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同協定은 1980년 5월에 다시 2년간 연장되었으나, 1982년 6월 北韓이 同協定書의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效力이 상실되었고, 1984년에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 86년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후 다시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에 다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서는 日本漁船에 대하여 入漁料가 부과되는 새로운 방안이 채택되었으나, 1989년 말로서 일단 기간이 만료,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다(상세한 것은 VI. 韓半島周邊水域에서의 國際漁業의 力學關係 참조).

c. 對이란 協定

北韓은 1979년, 호메이니 回教政府가 등장하면서 對이란 관계가 긴밀화 되었으며, 1980년 1월, 北韓經濟代表團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水産協力を 포함한 經濟交流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12월, 北韓産 냉동 명태 2만M/T을 1981년 내에 이란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2년 1월에는 이란·北韓間 漁業協力協定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北韓이 이란에 공급하는 物量은 연간 1만M/T이고, 北韓漁船은 이란

<표 4-4> 北韓의 對 이란 漁業協定內容 要旨²⁾

구 분	내 용
기 간	2년(어느 일방이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조업대상 해역	지방어민어장(연근해 12마일) 및 특정해역을 제외한 남부 이란해역과 인접공해
북한투입어선수	3,750톤급 모선 2척, 450톤급 어선 5척 ※ 이에 5소요되는 제반장비 제공, 승무원, 어업전문가 파견
가 격	◦ 식용어류 : 1kg당 4리알(50센트) ◦ 어 분 : 1kg당 40리알(5달러)
對이란 공급량	연간 총 1만M/T ※ 이중 최소한 8,000M/T은 식용 어종
이란어업훈련생 훈 련	◦ 모선 : 첫 6개월간 전승무원의 1/6, 다음 6개월간 전승무원의 1/3, 잔여 기간 전승무원의 2/3 ◦ 기타 어선 : 3~5명 승선

沿近海에서 2년동안 조업하며, 이란의 수련생을 의무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同協定の 내용은 이란 南部 海域은 주어장이 해안으로부터 12마일 안에만 발달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同海域을 대상조업지역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漁場이 좁고, 또한 供給物量을 1만M/T으로 과대 책정하고 있으며, 未熟練의 이란 修鍊生을 필히 승선시켜야 되고, 供給魚價도 낮아 採算性이 별로 없어서 北韓으로서는 앞으로 同 協定の 정상적인 이행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이 協定은 꼭 協定內容 그 자체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對이란 原油導入 및 貿易擴大와 이란-이라크戰 終戰後의 經濟進出 등을 겨냥하고 있어 對이란 水産協力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

d. 其他 國家

北韓은 전술한 소련, 日本, 이란 이외에도 아프리카, 南美沿岸에 위치한 비동맹 국가들과의 漁業協力도 추진하고 있다. 즉, 가이아나(1978년 수산협정 체결), 기니아, 말타, 모잠비크(1982년 이후 수척의 트롤선 진출), 북예멘, 나이지리아(1982년 수산물 공급계약 체결) 등과도 水産分野의 協力強化를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遠洋漁場의 확보 및 水産物輸出에 의한 外貨獲得을 포함하여 水産部門의 진출 노력을 적극화 하고 있다.

C. 遠洋漁業 進出

北韓은 1967년에 체결된 朝·蘇漁業協定을 근거로 하여 61년부터 蘇聯의 우수한 트롤漁業技術을 도입하여 오호츠크海, 캄차카 近海를 중심으로 한 北洋트롤漁業에 진출하고 있다. 漁船團은 10~15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船團은 보통 1000~3750톤급 船尾 트롤船 3척 내외, 200~450톤급 作業船 5~10척, 1만~1만 5천톤급 工母船 1척, 3000~5000톤급 冷凍運搬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漁獲物은 주종이 역시 명태이며, 그 외 청어, 가자미 등이 있다. 漁獲量은 朝·蘇漁業協定에 20만M/T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정도의 량이 아닌가 추측된다.

4. 水産物 生産

北韓의 水産物生産量統計는 그들 특유의 비밀주의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표 4-5〉 FAO 水産統計年報上의 南北韓 魚貝類 生産量 比較²⁶⁾
(단위: 천M/T)

	19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韓國	2,085	2,092	2,163	2,091	2,366	2,281	2,400	2,477	2,650	3,103
北韓	1,190	1,262	1,330	1,400	1,500	1,550	1,600	1,650	1,700	1,700

알 재주는 없으나 최근의 몇가지 資料에 의하여 生産量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우선 FAO가 발행하는 水産統計年報에는 推定値라는 註書가 붙어 있으나 〈표 4-5〉와 같이 나와 있다. 다만 여기서는 비교의 목적으로 韓國의 生産量도 함께 게재했다.

그러나 FAO에 근무하는 日本人 Chikuni는 이 統計의 기초가 매우 박약하며, 또 단편적이거나 간접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하고 있어서 정확성이 적다고 주장하고, 1977년부터 시작된 FAO/UNDP의 水産業開發計劃을 통하여 그가 수집한 資料를 근거로 하여 추산한 바에 따르면 1982년부터 84년까지 사이의 平均生産量은 236만M/T 정도라고 하며 種類別로는 〈표 4-6〉과 같다고 한다.

한편 北韓이 元山일원에 水産業示範團地를 조성하기 위한 外貨誘致를 위해 海外弘報用으로 朝鮮海産物輸出入會社 이명으로 1988년에 발행한 「DPR Korea's Fisheries Industry」에는 최근의 種類別 生産量이 〈표 4-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22)
 <표 4-6> Chikuni에 의해 추산된 北韓의 魚種別 生産量
 (단위: 천M/T)

어 종	생 산 량	어 종	생 산 량
저 서 어 류	1890	조 개 류	60
부 어 류	240	기 타 동 물	10
연 어 류	90	해 조 류	20
새우·갑각류	6	其 他	90
계 류	5	計	2411

24)
 <표 4-7> 北韓이 발표한 魚種別 生産量
 (단위: 천M/T)

어 종	생 산 량	어 종	생 산 량
명 태	1996	갑 각 류	11
정 어 리	216	해 조 류	700
멸 치	85.6	淡水魚類(養殖)	110
silver fish	33.3	其 他	452.6
無脊推 動物	88	計	3500

이들 두 統計는 기준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ㄱ) 前者(Chikuni의 推定値)에서는 底棲魚類가 189만M/T이라고 했는데 後者(北韓의 발표치)는 명태가 약 200만M/T이라고 했다. 이것이 같은 어종을 가리키는 지는 확실치 않으나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後者가 10% 정도 크나 대체로 비슷하다.

ㄴ) 前者에서의 浮魚類와 後者에서의 정어리, 멸치가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각각 24만M/T, 20만M/T으로서 後者가 20% 정도 적다.

ㄷ) 甲殼類(後者에서는 계류 포함)는 같다.

ㄹ) 前者에서 조개류, 오징어류와 기타 동물이 後者에서 무척추동물 이라고 본다면 前者에서는 37만M/T인데 비하여 後者에서는 sliverfish를 포함하여 12만M/T으로서 비교가 안된다.

ㅁ) 前者의 연어류를 後者에서는 어디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淡水魚에 포함시켰다면 9만M/T 대 11만M/T으로 수공이 가는 숫자다.

ㅂ) 兩者의 수치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海藻類와 其他이다. 즉 前者에서는 海藻類가 2만M/T밖에 안되나 後者에서는 70만M/T이나 되는데, 이것은 前者는 天然産 밖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비하여 後者는 養殖量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또 其他가 前者는 9만M/T에 불과한데 비하여 후자는 45만M/T이나 되어 그 차이가 36만M/T이나 되는데, 이것이 兩者의 숫자상의 차이(350만 - 244만 = 106M/T)중 30%를 차지한다.

ㅅ) 後者の 統計에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명태가 약 200만M/T으로 海藻類를 제외한 魚貝類의 量(280만M/T) 중의 70%, 海産魚類만으로 치면 86%나 차지하고 있어, 魚種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後者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나 北韓보다는 漁船勢力이나 活動範圍나 技術水準의 어느 면을 보아도 우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韓國이 海藻類와 養殖量을 모두 포함하여 1985년에 겨우 300만M/T을 돌파했고, 최고기록으로는 1986년에 366만M/T을 올렸으나 1987년에는 333만M/T, 1988년에는 321만M/T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350만M/T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표 4-8〉 國土統一院이 평가한 北韓의 水産物⁶⁾
總生産量
(단위 : 천M/T)

연도	북한의 발표치	평가치
1975	1460	1300
79	2000	1700
80	-	1700
82	-	1970
84	3500	2230
85	3600(그중 어류 2390)	2420
86	-	2370
87	-	2123
88	-	2146

한편 國土統一院이 北韓이 발행한 朝鮮中央年鑑 기타 각종 資料를 종합하여 北韓經濟를 평가한 것에 의하면 최근의 水産物生産量은 〈표 4-8〉과 같이 1987년도에 212만3천M/T, 88년도에 214만6천M/T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역시 수공이 가는 수치일 것 같다.

또 최근의 漁業部門別生産量을 보면 〈표 4-9〉와 같이 海面漁業이 전체의 약 55%, 養殖業이 41~46% 수준인데, 이것은 韓國의 部門別 生産比가 一般海面漁業이 대략 45%, 遠洋漁業이 대략 25%여서 海面漁業이 70%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北韓은 海面漁業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것 같으며, 養殖量은 韓國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여 상당한 수준이 아닌가 추측된다.

7)
 <표 4-9> 國土統一院이 추산한 최근의 北韓의 部門別
 水産物生産量
 (단위 : 천M/T)

구	분	1987년	1988년
총	량	2123	2146
해	면 어업	1150	1182
양	식업	871	964
담	수 어업	95	105

5. 앞으로의 展望과 課題

北韓은 面積으로 보아서는 韓半島의 55%나 차지하고 있으나 耕地面積은 17%에 불과하므로 2천만이 넘는 人口의 主食糧源 확보를 위해서는 農業生産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畜産物의 增産은 韓國보다도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水産物의 開發은 國民의 動物性 蛋白質食糧源 확보를 위해 중요함은 물론이나 外貨獲得源으로서도 귀중한 역할을 한다.

北韓은 1983년에 35억\$의 外債를 안고 있는데, 이것의 償還은 北韓의 經濟實績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이며, 利子支拂만 하더라도 1983~85년에 할 것을 1986~89년에 延滯支拂한 것에 불과하고 元金の 상환은 생각도 못할 처지에 있다. 그러면서도 經濟開發의 추진을 위해서는 또 막대한 外資가 필요한데, 그것의 借入先도 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國內에 二次産業部門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水産業의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표 4-10〉 최근 3년간의 南北韓 水産物輸出實績²⁶⁾
(단위 : 백만\$)

品 目	한 국			북 한		
	1985	1986	1987	1985	1986	1987
鮮魚, 冷凍魚	400	574	741	5	9	9
乾魚, 鹽藏, 燻製品	31	32	41	8	9	12
貝類, 甲殼類	229	335	456	11	15	33
魚類 통조림	53	110	131	2	2	5
貝類 등 통조림	82	118	134	2	2	3
油脂	-	-	-	-	-	-
魚粉	1	2	2	-	-	-
計	797	1,171	1,506	28	36	62

그러나 FAO統計(표 4-10)에 의하면 1987년의 水産物 輸出金額은 6천2백만 \$인데, 同年 韓國의 實績은 15억 \$로 北韓의 24배이다.

그들은 제2차 經濟開發 7個年計劃(1978~84년)에서 水産物生産目標 350만 M/T을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1987~1993년에 시행하기로 한 제3차 7個年計劃에서는 水産物生産을 電力, 石炭, 鋼鐵, 非鐵金屬, 시멘트, 비료, 직물, 곡물, 干拓地 개간 등과 함께 10大生産目標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北韓經濟에서 水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 계획에서 처음에는 1989년까지 水産物 生産目標을 500만M/T으로 잡았다가, 후에 그것의 달성기간을 1993년까지 연장하면서 目標量도 1100만M/T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그 중 魚類는 300만M/T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800만M/T이 海藻類와 魚類이외의 動物이라는 뜻인데 이 수치는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즉 이 목표는 總量으로 따져 지금의 生産能力의 4배쯤 되는 것인데, 北韓의 生産體制, 産業基盤, 産業構造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의 달성을 위해서는 遠洋漁業과 養殖業 부문이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3世界 各國에의 遠洋漁業의 진출, 冷蔵運搬船의 遠洋漁場에의 투입, 蘇聯으로부터서의 技術支援를 통한 養殖業 부문의 발달 등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周邊與件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닌데다 生産量 1,100만M/T은 世界 1位를 10년 이상이나 지속하고 있는 日本의 生産量에 맞먹는 것이어서 아무리 보아도 지나친 과장인 것 같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水産業 발전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V. 韓半島周邊水域에서의 國際漁業의 力學關係

韓半島를 둘러싼 海域, 즉 東海와 西海를 사이에 두고 韓國과 인접해 있는 나라는 蘇聯, 日本, 北韓, 中國 등이다. 이 東海와 西海는 世界3大 漁場 중에서도 최대의 어장인 北太平洋의 남쪽 변두리에 위치하여 비교적 水産資源이 풍부하며, 또 이들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牧畜業이 크게 발달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水産物을 動物性蛋白質食糧의 供給源으로서 이용하여 왔고, 최근 經濟水準이 향상되면서 그 수요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으므로 漁業분야의 경쟁이 혹심하다.

韓國은 이들 나라 중 日本과는 비교적 일찍부터 國交가 정상화되고 漁業協定을 체결하는 등 交流가 있었으나 蘇聯, 中國, 北韓 등 共產國家들과는 韓國動亂 당시부터서의 敵對關係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協力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共產圈의 開放이 시작되어 蘇聯, 中國과는 非公式로나마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北韓과는 冷戰 狀態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北韓艦艇에 의한 韓國漁船의 나포 등으로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漁業이라는 次元에서 韓半島周邊水域의 力學的關係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이 海域에 있어서의 各國의 經濟水域 宣布現況, 또 各國間的 漁業紛爭과 漁業協力關係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排他的 水域의 宣布와 그 영향

A. 蘇聯의 排他的 水域

韓半島를 둘러싼 海域에 있어서의 排他的水域의 선포는 1976년 12월 蘇聯이 排他的漁業專管水域을 선포하고 익년 3월부터 시행한 것에 비롯된다. 사실 蘇聯은 海洋國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美國의 經濟水域 선포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76년 11월의 美·蘇漁業交渉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럽 9개국 공동체 (EC)가 200해리 共同經濟水域을 設定하기로 결의하자 여태까지 大西洋 北部에서 연간 457만M/T(1973년치)의 어획을 올리던 蘇聯으로서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自救策으로서 自國漁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蘇聯은 1950년대까지는 漁業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아서 1960년의 漁獲量은 300만M/T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후 動物性 蛋白質 資源으로서의 水産物의 重要性이 새롭게 인식됨으로써 1970년에는 725만M/T으로 늘어나 세계 2위에 이르렀다. 더우기 1974~75년에 걸쳐서는 農作物의 대흉작으로 飼料가 부족하여 家畜이 대량 죽는 사태가 일어나자 水産物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漁業開發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蘇聯의 經濟水域宣布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日本인데, 日本은 世界漁場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도 排他的水域을 선포하게 되면 得도 크지마는 失도 클 것이므로 무척 망서렸다. 그러나 蘇聯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排他的水域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드디어

1977년 5월에 선포, 7월에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北韓도 어떤 의미에서는 日本보다는 蘇聯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1977년 8월부터 排他的水域을 시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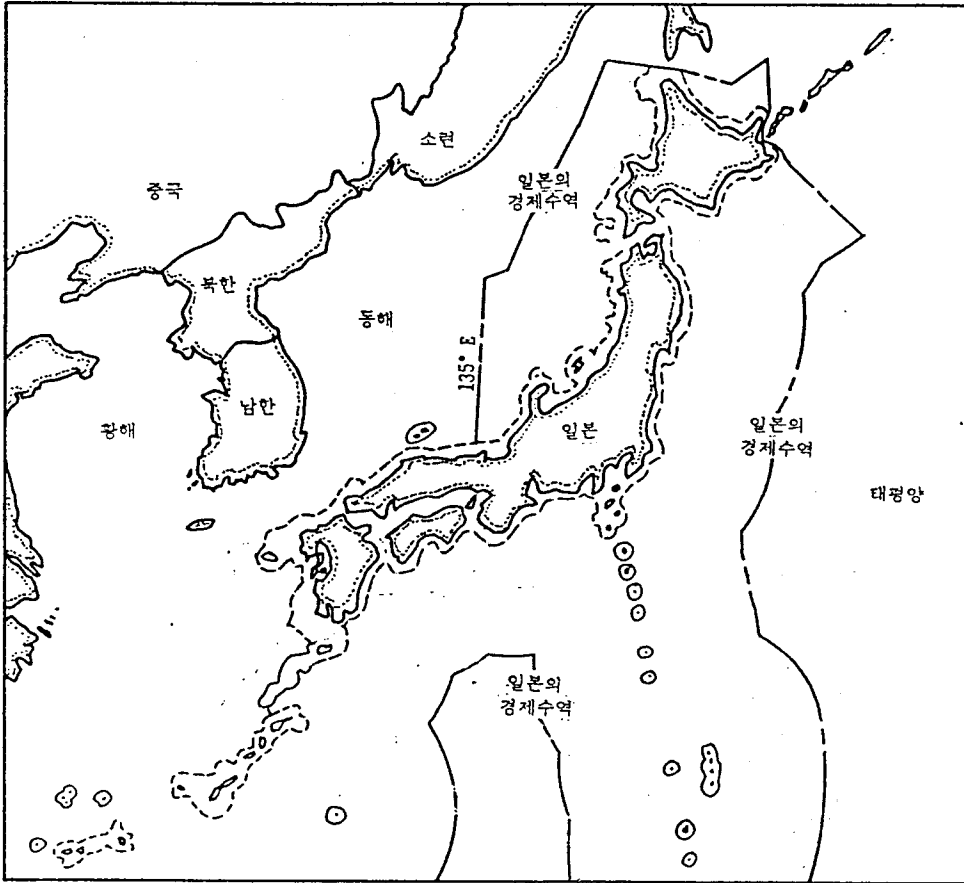
그런데 蘇聯의 漁業專管水域은 1970년대부터 조업하던 캄차카半島 주변 해역으로부터 추출되는 등 韓國에도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 研究의 主題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日本과 北韓의 排他的水域에 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B. 日本의 排他的 水域

美國, 蘇聯 등 日本漁船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水域에 대한 관계국의 排他的水域 선포에 따라 日本도 언젠가는 排他的水域을 선포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自國漁船이 워낙 많이 他國近海에까지 진출하고 있는데다 관련 周邊國家들도 韓國을 비롯, 蘇聯, 北韓, 中國, 台灣 등 많은 나라에 걸치고 있을 뿐더러 그러한 나라들을 자극하는 것이 결코 自國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排他的水域宣言의 결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만약 蘇聯 漁船이 일방적으로 北海道近海에까지 와서 조업하는 날에는 손실이 크므로 1977년 5월 漁業保存水域이라는 이름으로 排他的水域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日本은 이 선포과정에서 아직 排他的水域을 선포하지 않고 있는 韓國, 中國, 台灣 등 3개국을 자극하여 그 나라들도 排他的水域을 선포하는 날에는 得보다 失이 클 것을 염려하여 東經 135도선 以西의 東海와

거기로부터 九州, 硫球列島에 이르는 領海밖의 水域은 排他的水域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韓國漁船에 대하여는 硫球列島 以東의 太平洋 海域에서는 영향이 있으나 東海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림 5-1> 日本의 漁業保存水域 略圖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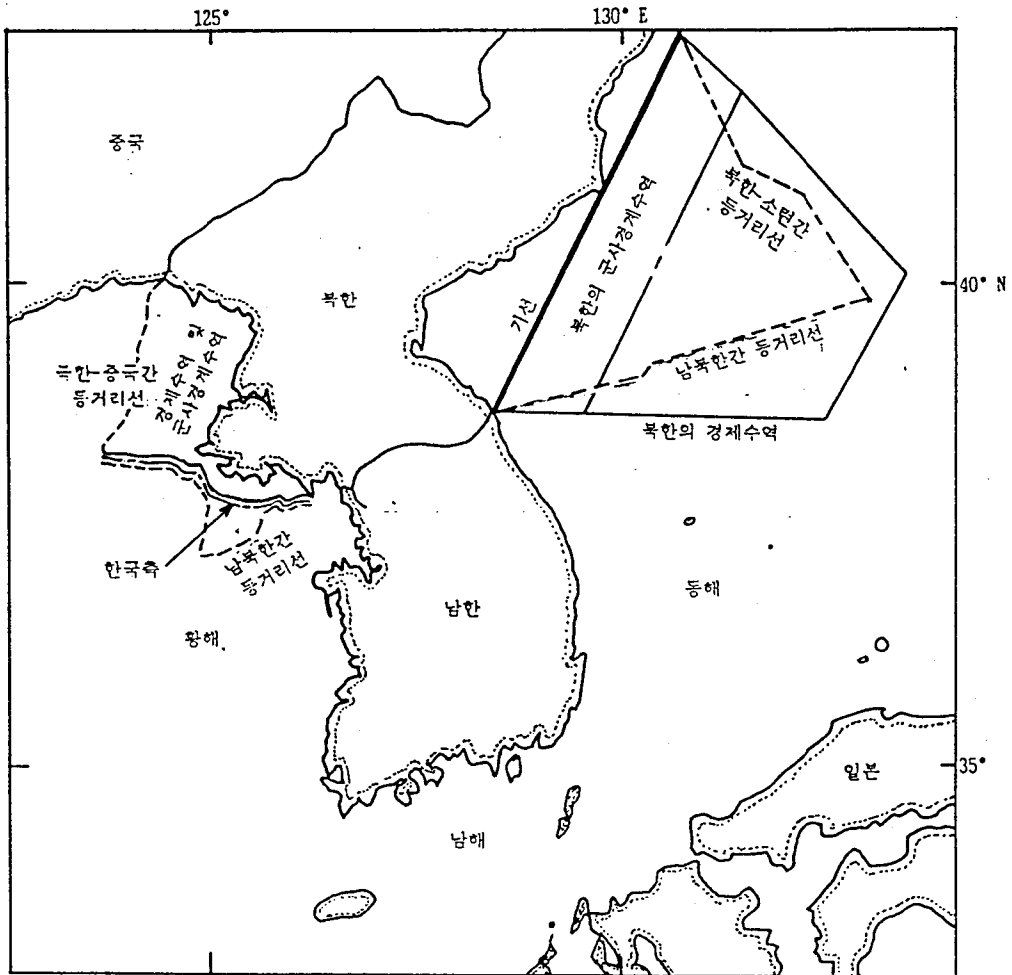
C. 北韓의 排他的 水域

北韓의 排他的水域은 排他的水域이라는 그 사실 이전에 軍事的 對峙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차피 韓國漁船이 그 水域에 出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北韓의 排他的水域의 國際法上的의 地位도 適法하게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韓國과의 사이에 漁業에 관한 어떤 형태의 協力關係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北韓의 排他的水域은 역시 經濟水域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며, 經濟水域의 선포 자체를 놓고 크게 비난할 수는 없으나 그 內容에는 法律的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위에 北韓은 또 이 水域內에 領海基線으로부터 50해리까지는 軍事境界水域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國際法上 유례없는 排他성과 排他성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水域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범위나 隣接國 또는 對向國과의 경계 등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림 5-2>와 같이 추정되고 있을 따름이다.

또 北韓의 經濟水域은 그 基線의 설정에 있어서도 適法性이 결여되어 있다. 우선 國際法上的의 基線은 干潮線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灣口의 경우는 그 입구의 폭이 24해리 이하인 경우에만 直線基線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東韓灣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國際法上的의 灣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해역에 直線基線을 적용하여 豆滿江 입구의

나주리로부터 江原道 枹城까지 사이에 直線基線을 설정하고 있다. 이 基線의 길이는 258해리나 되어 24해리의 10배도 넘는 것이며, 육지로부터 서의 최대거리는 75해리나 되는 것이다.



<그림 5-2> 北韓의 經濟水域, 軍事境界水域 및 美國務省 地理局이 작성한 各國間 假想的 等距離線^{10) 11)}

또 排他的 經濟水域이 隣接國 또는 對向國과 상충될 때는 利害當事國間의 合意에 의해 境界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韓國은 물론 蘇聯, 日本과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日本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무시되었고 다만 蘇聯과의 사이에만 1986년, 「經濟水域 및 大陸棚의 境界에 관한 條約」을 체결하여 蘇聯쪽 境界만 확정짓고 있을 따름이다.

西海에 있어서의 經濟水域은 基線으로서는 비록 干潮線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으나 中國과의 사이는 等距離半分線까지로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선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또 經濟水域전역을 軍事境界水域으로 선포하고 있는 등 그들 특유의 超法律的인 行포를 부리고 있다.

2. 韓國과 日本間의 漁業紛爭과 漁業協定

A. 漁業紛爭과 平和線의 宣布

日本은 세계 제1의 水産國이고 그들 漁船團은 2次大戰前부터 세계 도처에 진출하였으며, 그들의 活動은 各國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시켜 왔다. 그러다가 終戰後 聯合軍이 日本에 進駐하자 1945년 9월, 日本 周邊水域에 소위 「맥아더 라인(McArthur Line)」을 설정하고 그 선밖으로는 日本漁船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이러한 日本의 海外漁業進出 봉쇄는 韓國에서도 간접으로 혜택을 입은 셈이나 聯合國과 日本 사이에 平和條約이 체결되어 「맥아더 라인」이 철폐

되면 다시 세계 도처에 日本漁船이 진출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952년 4월 聯合國은 平和條約을 체결하면서 그 제9조에서 日本으로 하여금 各國과 漁業協定을 체결할 것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日本은 美國과 캐나다에 대해서는 抑制의 原則을 받아들여 東經 175도 以東의 美國側 海域에서는 연어·송어漁業을 自制한다는 「美·加·日漁業條約」을 체결 하기에 이르렀다.

韓國은 平和條約의 當事國은 아니지만 條約 第9조의 利益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으므로 1951년 10월에 日本에 漁業協定을 체결하기 위한 交渉을 제의하였으나 日本은 불응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日本은 平和條約의 發效와 더불어 韓國沿岸에 대거 出漁해 올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韓國으로서 日本漁船의 무질서한 操業을 방지하여 漁業資源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漁民의 權益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2년 1월에 선포한 것이 이른바 平和線으로 불리는 「隣接海洋의 主權에 대한 大統領宣言」인데, 이 宣言은 1945년 美國의 隣接公海上에 있어서의 漁業과 大陸棚에 관한 2개의 「트루만宣言」이라는 國際的先例에 따른 것이었다.

이 平和線 선포 이후 韓·日兩國間에는 그것의 國際法的 合法性을 둘러싼 論爭과 韓國政府의 日本漁船 團束에 따른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日本은 公海自由의 原則을 내세워 平和線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으며, 韓國은 平和線의 設定이 國際的先例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는 동안 日本漁船은 韓國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平和線을 계속 侵犯 하였으며, 1965년 韓·日間에 漁業協定이 체결될 때까지 나포된 日本漁船은 327척이었고 억류되었던 船員은 3,900명에 이르렀다.

B. 漁業協定の 締結과 主要內容

韓·日間の 漁業協商은 1952년 2월부터 시작한 韓·日會談의 重要議題중의 하나였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 것은 1961년 第6次會談 이후로서, 장장 14년간의 끈질기고 긴 協商끝에 1965년 6월, 「大韓民國과 日本國間の 漁業에 관한 協定」이 서명되고, 같은 해 12월 批准書를 교환함으로써 발표되게 되었다.

漁業協定締結의 중요한 틀이 되었던 것은 1960년 第2次 UN海洋法會議 이후 國際間에 慣行되어 온 12해리 漁撈專管水域制度이다. 즉 第2次 UN海洋法會議에서 美國과 캐나다는 소위 제네바方式이라고 불리는 領海 6해리와 그 外側에 6해리의 接續水域을 더한 12해리 漁撈水域을 제안한 바 있다. 이 案은 결국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沿岸國에 인접된 水域에서의 排他的 管轄權을 주장하는 논리는 우리의 「平和線」設定의 논리와 기본이 같은 것이며, 이 12해리漁撈專管水域制度는 그후 國際적으로 兩者條約의 基本方式으로 遵용되어 慣習國際法化 되었었다.

前文과 本文 10個條 및 附屬書로 구성된 韓·日漁業協定の 主要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各種水域의 범위

兩國은 當事國의 基線에서 12해리까지의 漁業專管水域을 설정하였는데, 이 水域은 沿岸國이 漁業에 관하여 모든 管轄權을 排他的으로 행사하는 水域으로서 이 水域內에서는 漁撈活動의 權利는 沿岸國 漁民을 위하여서만 유보하며, 이를 침해한 他方國漁船에 대하여는 沿岸國이 그 管轄權에 의거하여 단속을 하고 裁判管轄權을 행사할 수 있다.

漁業專管水域의 外側에는 共同規制水域(제2조)을 설정하여 漁業資源의 持續的 生産性을 확보하기 위한 漁業規制措置를 하기로 했는데, 제3조에서는 同水域內에서 底引網漁業, 旋網漁業 및 60톤以上の 고등어채낚기 漁業에 대한 暫定的規制措置로서 合意議事錄에 의거, 연간 總漁獲量을 15만 M/T으로 정하고 10%의 變動性을 부여했다.

또한 同條項의 附屬書로서 위 3個業種에 대하여 最高出漁隻數 또는 統數, 漁業規模, 網目 및 集魚燈의 光力에 제한을 두고 있다. 合意議事錄은 또한 兩國政府가 이미 國內的으로 설정한 각종 漁業禁止區域線內에서 相對國 漁船이 당해漁業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 同協定 제5조에서는 共同規制水域 外側에 共同資源調査水域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水域의 범위와 구체적 調査內容은 漁業共同委員會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 水域은 당초 韓國側이 協定上에 平和線의 형태를 남겨두기 위해 共同規制水域밖 平和線까지 水域을 資源調査

水域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으나 日本側이 協定속에 平和線을 표시하는 어떠한 水域도 반대하고 대신 共同調査水域을 설정하여 魚族資源에 관한 科學的 調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資源保存措置를 취할 것을 수정 제의하여 합의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2) 團束 및 裁判管轄權

漁業專管水域을 침해한 他方國漁船에 대해서는 沿岸國의 管轄權에 의거, 단속하고 裁判管轄權을 가지나, 共同規制水域에서의 위반에 대한 團束과 裁判權 管轄(제4조)은 漁船의 國籍國이 행사하는 이른바 旗國主義原則을 취하고 있다.

(3) 各種委員會 및 有效期間

同協定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共同委員會(제6조)는 각 締約國 政府가 임명하는 3인씩의 委員으로 구성되며 同協定에 규정된 諸般主要 事項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때는 締約國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권고한다.

또한 協定の 해석 및 실시에 관한 締約國間의 紛爭은 우선 外交上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紛爭은 仲裁委員會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仲裁委員會는 3인의 委員으로 구성되며 委員會가 내린 결정에는 兩締約國政府가 따르기로 한다.

同協定の 有效期間은 發效日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후에는 어느 一方 締約國이 他方締約國에 대하여 同協定을 終了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

부터 1년간 효력을 갖기로 하였다.

C. 協定締結後의 變化

(1) 韓國漁業의 發展

韓·日漁業協定 체결 후 兩國間的 漁業秩序는 안정되었다. 즉, 協定の 發效後 漁業紛爭은 점차 감소하였고 兩國間的 특별한 力學關係에 기인하는 相互不信感도 점차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韓國의 漁業은 1965년 이후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1961년에 46만M/T으로 세계 19위이던 水産物生産量이 10년후인 1971년에는 74만M/T으로 1.6배, 세계 16위, 20년 후인 1981년에는 237만M/T으로 5.2배, 세계 9위, 25년후인 86년에는 310만 M/T 으로 6.7배, 세계 7위라는 大水産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漁業의 신장은 기본적으로는 政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 企業家의 적극적 投資, 주로 日本으로부터서의 漁撈裝備나 新技術의 도입, 水産技術人力養成의 質的, 量的 向上 등에 기인하나 한편에서는 韓·日漁業 協定締結에 따른 水産行政機構의 개편, 對日請求權資金 및 漁業協力資金의 도입으로 生産基盤이 대폭 개편된 것도 무관하지는 않다.

즉, 韓國政府는 1966년 水産廳을 신설하여 水産業의 체계적인 發展計劃의 수립과 수행을 담당케 하는 한편, 낙후된 水産業을 日本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고자 平和線의 양보로 얻어진 對日請求權資金 3억\$ 중 2천7백 만\$, 漁業協力資金 9천만\$ 등을 주로 漁船의 大型化, 試驗船의 導入, 漁船裝備의 改良, 水産物加工施設의 확충 등에 투자하여 漁業의 近代化에

주력했다. 그리하여 1965년의 韓國의 漁船척수는 총 5만 1천척 으로서 주로 沿岸漁業에 종사하는 것이었으나 請求權資金도입이 끝난 1974년말에는 총 6만 8천척에, 60만톤으로 大型化되고 또한 動力化되어 갔다. 이와 같이 韓·日漁業協定の 체결은 協定 자체가 韓國의 漁業發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나 制度的인 再編成과 漁業生産基盤을 마련함으로써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2) 北海道 및 濟州道周邊水域에서의 操業自律規制

1977년 들어 韓國과 日本 사이에 새로운 漁業분규가 생겨 韓日漁業協定이 일부 수정되었다. 즉, 1960년대말부터 出漁하기 시작한 韓國의 北洋 트롤 漁船團은 주로 베링海나 캄차카海峽에서 조업했으나 1977년 3월 蘇聯이 200해리 漁業水域을 선포함으로써 이 수역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그 중 500~5,000톤급 漁船 32척이 北海道 周邊水域으로 이동하여 日本의 트롤 漁業禁止區域에까지 들어가서 조업함으로써 兩國간에 漁業紛糾가 발생하였다. 이 海域에서의 韓國漁船의 활동은 1978년에는 24척이 약 15만M/T의 명태를 漁獲하였는데, 이 物量은 韓國의 명태 需要量의 60%나 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79년 11월에는 日本漁民과 韓國操業船간에 충돌 이 발생하여 韓國漁船 3척의 선체 일부가 손상되고 船員 4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욱 사태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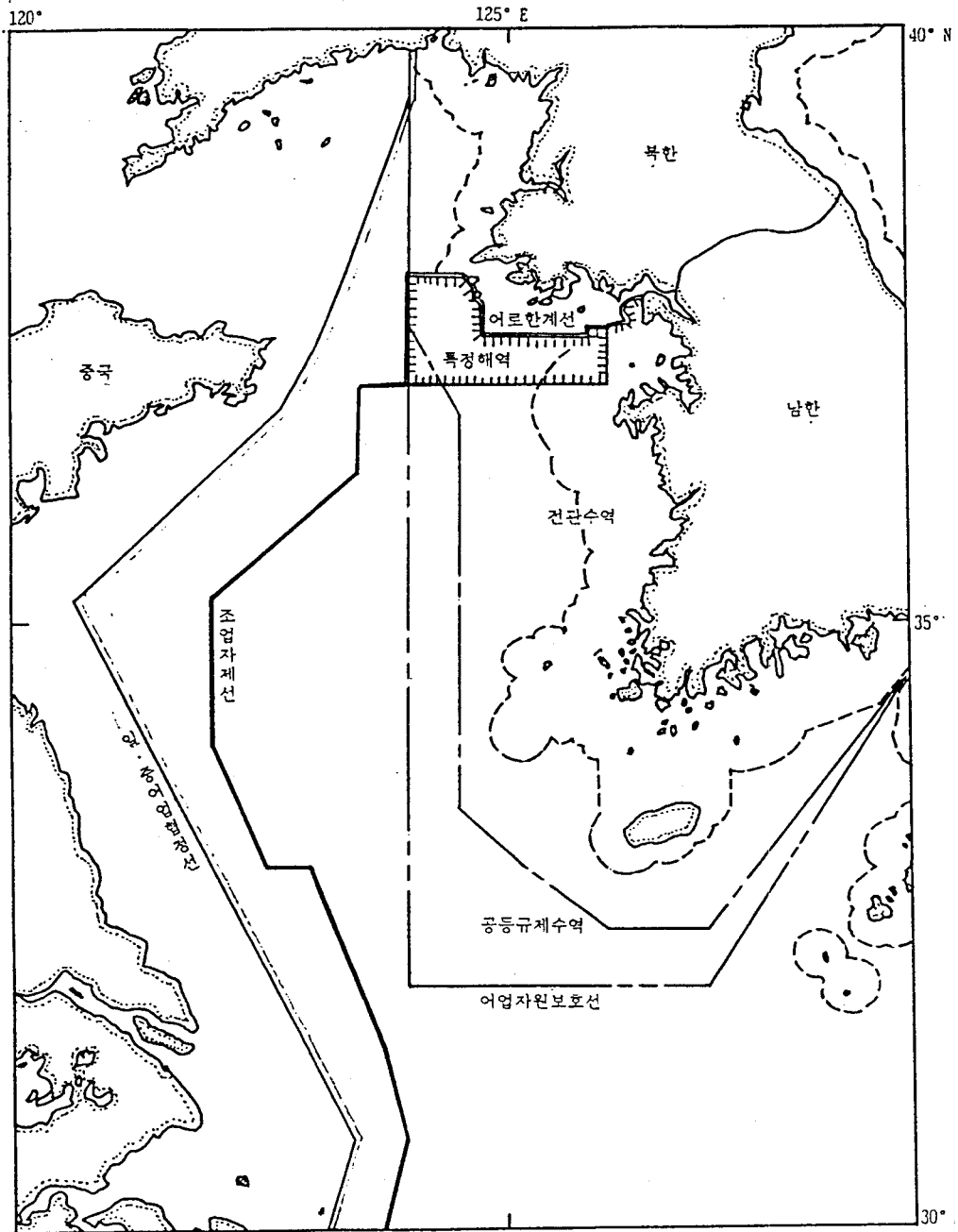
사태가 이에 이르자 日本側은 自國漁民들이 준수하고 있는 日本의 國內措置, 즉 트롤禁止區域內에서 漁撈活動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한 韓國側 立場은 근본적으로 北海道 周邊水域이 韓·日漁業協定上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附屬書에도 포함되지 않은 水域이며, 日本의 요구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兩國의 友好關係를 고려하여 韓國側은 이 水域마저 自律規制를 실시할 용의가 있음을 제시하고, 그 대신 日本側도 이에 상응하는 制限措置를 濟州道 周邊水域에서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3월부터 1980년 10월에 걸친 會談에서 합의된 主要內容은 3년간의 有效期間으로 韓國은 北海道 周邊水域에서 漁船數를 17척으로 제한하며, 日本은 濟州道 周邊水域에서 底引網漁船數를 漁業協定 規定上의 最高出漁數 270척에서 106척으로 조정하고, 最高同時出漁隻數를 66척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兩國은 1次合意約定이 1983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4차에 걸친 合意를 통하여 1991년 4월말까지 연장 실시할 것에 합의하여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3. 中國과 日本間의 漁業關係

A. 背景

黃海·東支那海는 전통적으로 西日本漁民들의 주요한 漁場으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1945년 이후는 소위 「맥아더 라인(McArther Line)」의 설정으로 어려웠던 때도 있었으나 1952년 聯合國과의 平和條約이 체결되어 그것이 해제되자 다시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편 中國은 1949년 中共政權의 수립과 더불어 漁業振興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함과 동시에 漁業을 규제하기 위한 法制度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1950년 黃海·東支那



〈그림 5-3〉 中國 - 日本과의 漁業協定水域 및 韓國의 西海쪽
 漁業自製線과 漁撈限界線
 (자료 : 水産廳)

트몰에 漁業禁止線(일명 毛澤東라인)을 설정하고 이 水域內에서는 外國 漁船은 물론 自國漁船도 전면적으로 트몰漁業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日本漁船이 中國沿岸에 계속 出漁하자 中國當局은 드디어 1950년 12월 中共當局은 日本漁船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 4월 日中 民間漁業協定이 체결되기까지 中國當局에 나포된 日本漁船數는 158척, 船員數는 1,909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日本 水產業界는 中國沿岸에서의 安全操業과 相互漁業協力關係를 유지하기 위한 民間次元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53년 韓國戰爭의 휴전이 성립되어 日本과 中國간의 긴장이 완화된 후, 中國으로서도 日本과 政治的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日本의 漁撈技術을 도입하여 自國의 漁業伸張을 도모하고자 양국간의 漁業紛爭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10월부터 시작된 양국간 民間次元의 對話는 1955년 4월, 日本의 日·中國漁業協議會와 中國의 漁業協會간에 民間漁業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었다.

B. 民間漁業協定

1955년에 체결된 民間漁業協定은 協定期間이 1년으로 정하여졌으나 1956년과 1957년 두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그러다가 兩國간의 관계가 악화되자 中國은 漁業協定の 延長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日本漁船들이 漁業禁止 區域 등 中國의 規制措置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나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日本은 「漁撈活動에 관한 暫定規則」을 自體制定하여 日本漁船의 操業違反을 자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正式協定 없이도 5년간 毛澤東라인이 잘 준수되었다. 이러한 日本側의 自制行爲는 中國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제2차 漁業協定이 1963년 11월 北京에서 체결되었다. 中國은 이 協定에서 6개의 漁撈區域을 다소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1957년의 毛澤東라인의 일부 修正과 1958년의 12해리 領海宣布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65년 12월에는 다시 제3차 民間漁業協定이 체결되었는데, 이 協定の 內容은 근본적으로는 2차 協定과 다를 바 없으나 日本漁船에 대하여 보다 많은 制限을 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제1 및 제2 漁業水域이 다소 확장되었으나 트롤 漁具의 網目 크기가 제한되고 제7 漁業水域에서의 操業隻數가 제한되었다. 이 1965년의 協定은 1975년 8월 政府間 漁業協定으로 발전될 때까지 6회에 걸쳐 연장·운영되었다.

C. 政府間 漁業協定

政府間 漁業協定은 1972년 9월 北京에서 서명된 日本·中國政府間의 공동 성명에 따라 非政府間 協定을 政府間 協定으로 전진시킨 것으로, 1975년 12월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同協定에서 兩國은 協定水域(黃海·東支那海) 내에서의 漁業資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操業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協定 위반에 대한 단속 절차는 旗國主義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他方 締約國의 漁船이 協定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他方締約國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他方締約國은 그 처리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兩國은 각기 自國의 漁民 및 漁船에 대하여 航行과 操業의 安全, 秩序의 유지와 海上事故에 대비한 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또 어느 一方 締約國漁船이 他方締約國의 管轄水域안에서 緊急事態에 처했을 때는 他方締約國은 어선과 승무원에 대하여 원조와 보호를 해주며, 緊急避難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他方締約國의 당국에 통보하면 연락한 후 지정된 항구에 피난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 協定の 운영을 위해서는 各國이 임명하는 3인씩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共同協議會를 설치하고, 회의는 매년 번갈아 東京 또는 北京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協定の 有效期間은 3년으로 했다.

同協定은 附屬書에서 추가로 2개의 底引網休漁區, 3개의 底引網保護區 및 旋網保護區 등을 설정함으로써, 600마력 이상의 트롤漁船에 대해서는 周年操業을 금지하는 600마력초과 機船底引網操業禁止區域을 설정함으로써 海洋管轄權의 확대를 시도하였는데, 同區域은 中國의 領海基線으로부터 100~150해리의 水域에 걸쳐 설정된 것이다.

이 日中漁業協定은 주로 日本漁船의 操業活動을 규제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韓日漁業協定과 그 성격이 비슷한 데가 있다.

어쨌든 이 協定을 체결함으로써 日本은 中國近海漁場에서 안정된 操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相互間에 漁業紛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아진다.

4. 北韓과 蘇聯과의 漁業關係

北韓과 蘇聯과의 漁業協力關係는 1956년에 「太平洋 西北水域의 水産資源 利用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협정에 의거, 1961년부터는 北韓漁船이 오호츠크海에 진출하게 되었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協力相對國이다.

兩國은 그 후 1974년 1월, 10년간의 長期漁業協定을 맺음으로써 共同漁撈 및 技術協調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6년 12월, 蘇聯이 200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함에 따라 北韓도 1977년 8월, 經濟水域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兩國間에 새로운 協定의 체결이 필요하게 되어 1977년 7월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協定이 체결되고, 여태까지는 규제가 없었던 蘇聯 經濟水域內에서의 北韓의 漁撈活動에 제약이 가해져 漁船의 규모는 大型 트롤船 6척, 中型 어선 10척, 生産量은 연간 20만M/T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다가 兩國이 선포한 經濟水域의 경계에 관해 서로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1986년 1월, 「經濟水域 및 大陸棚境界에 관한 條約」을 체결 함으로써 東海에 있어서의 漁撈 및 探查活動時에 紛爭을 일으킬 소지를 제거하고, 또 共同漁撈作業과 海底資源探查 및 開發作業에 협력키로 하는 등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兩國은 매년 平壤과 모스크바에서 번갈아 漁業共同委員會를 개최하여 水産分野의 구체적인 合意를 도출해 왔으며 1988년 3월에는 平壤과

모스크바에 각각 水産代表部를 설치하는 등 쌍방간의 協力事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5. 北韓과 日本間的 漁業關係

北韓이 1977년 8월, 東·西海에 200해리 經濟水域과 50해리 軍事境界水域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日本側은 종래부터 조업을 해오던 기존 漁場의 확보문제에 있어서 北韓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9월, 平壤에서 北韓의 東海水産協同聯盟과 日本의 日·朝漁業協議會 간에 民間次元의 소위 「朝·日漁業協力에 관한 暫定合意書」가 체결되었다.

이 合意書의 主要內容은 操業範圍를 50해리 軍事境界水域밖의 200해리 經濟水域內로 한다는 것, 漁船의 규모는 200톤 이하로 한다는 것, 有效期間은 1977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것, 日本은 北韓이 漁撈技術과 漁具 등 機資材를 도입하는 것에 협력한다는 것, 그 외 相對側 漁船의 安全보장과 긴급구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이 合意書는 1978년 7월부터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北韓漁船의 日本 漁業水域(太平洋쪽은 제외)에의 入漁權을 명문화하여 추가했으며, 1980년에 다시 2년간 연장하였으나 1982년 6월 北韓은 본 合意書의 당사자인 東海水産協同聯盟 명의로 담화를 발표, 「쌍방간의 선린 관계를 고려, 再延長問題의 타결을 위해 선의의 아량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日本 당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유효기간을 그대로 넘기게 되었다」

고 日本側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經濟水域內에서 조업중인 日本 漁船의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日本側은 부득이 同水域內에서 漁船을 철수시켰다.

그러다가 1984년에 다시 合意가 이루어졌으나 北韓側이 日本의 명태 輸入쿼타를 5만M/T으로 增量할 것을 요구한 것을 日本側이 거절함으로써 1986년에 다시 소멸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87년 12월부터 시작하여 1989년말까지 유효한 새로운 合意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入漁料를 지불하고 操業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즉, 이 合意書에서 日本에 개방하는 魚種은 명태, 연어, 오징어, 게 등이며, 兩國은 合作 會社를 설립하기로 하고, 合作事業에 의한 漁獲物 중 명태는 M/T당 176\$에 日本이 구매하기로 했다.

또 오징어 入漁料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北韓은 漁獲量의 30%를 入漁料로서 요구했으나 日本은 國際水準을 고려, 2%를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산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M/T당 66\$를 지불하기로 했다. 流刺網과 延繩으로 잡는 연어漁業의 入漁料는 M/T당 230\$인데, 이것은 연어 養殖에 필요한 施設로 대치하기로 했으며, 게漁業의 入漁料는 양자의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北韓이 漁業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명태 이외는 고정된 漁獲쿼타를 정하지 않고, 漁船의 크기와 수, 漁期와 漁法 등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랐다. 이 규정에 의해 入漁가 허가되는 日本 漁船의 크기는 200톤 이하이며, 연어 漁期는 3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이고 漁船 隻數는 流刺網

41척, 延繩 30척이다. 오징어 漁期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漁船 隻數는 679척이다.

北韓은 1989년 11월, 이 合意書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는데, 폐지의 이유에 관해서는 北韓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으나 漁獲量 보고의 不正確性, 養殖施設 도입에 대한 日本側의 非協助 등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

6. 日本과 蘇聯間의 漁業紛爭과 漁業協定

A. 背景

日本과 蘇聯의 漁業關係는 1750년대부터 日本漁民이 千島列島(Kuril Is.)와 堪察卡半島 沿岸水域에서 漁場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兩國 政府間의 關係는 1850년 日·露戰爭 이후 日本이 러시아 領海에서 漁業權을 가지는 日·露漁業協定の 체결로서 시작되었고, 第1次 世界大戰後에는 蘇聯의 革命政權 定着후인 1928년에 새로운 日·蘇漁業協定이 체결되었다.

이후 蘇聯沿近海水域에서의 兩國의 漁獲實績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日本이 第2次 世界大戰에서 패한 후 蘇聯沿岸에서의 日本의 漁業權은 失效됨으로써 조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1952년 聯合國과의 平和條約 發效後 蘇聯近海 公海上에서 새로운 漁場을 개발함에 따라 다시 漁獲量이 증가되어 연어·송어 漁獲實績이 1952년에 3만 6천M/T이던 것이 1955년에는 17만M/T으로 급격한 伸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日本의 漁獲實績이 신장하게 되자 蘇聯은 연어·송어 資源이

남획되고 있음을 이유로 1956년 3월 漁業水域에 관한 소위 Bulganine Line을 설정함으로써 北洋에 있어서 日本의 漁業에 관한 規制措置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宣言은 오호츠크海를 포함하는 방대한 범위의 公海水域에 대하여 指定海域을 설정하고 操業을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蘇聯의 일방적인 宣言은 결국 日本으로 하여금 漁業交渉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1956년 5월에 日·蘇漁業協定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함께 國交回復을 위한 교섭도 병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同協定에 의거 매년 日·蘇漁業委員會가 개최되고, 이 委員會를 통하여 協定水域에서의 연어 漁獲쿼타를 日本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어와 게에 대하여도 稚魚捕獲禁止 및 漁具規制를 하였다. 이 당시 兩國間에 가장 큰 關心對象魚種은 연어였는데, 協定 체결 당시인 1956년에는 6만 5천M/T의 쿼타가 인정되었으나 이 양은 協定체결 전인 1955년의 실적인 17만M/T의 절반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日·蘇間의 漁業關係는 蘇聯의 沿近海水域에서 日本의 操業이 규제받는 次元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協商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곤 하였다.

이 北西太平洋의 漁業은 日本에 있어서는 그 比重이 매우 크고 日本 漁民의 生活과 經濟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協商過程에서 볼 때 蘇聯이 Bulganine Line을 設定하고 領海外側水域에서 日本의 漁獲에 쿼타를 배정하는 것은 蘇聯의 일방적인 規制措置로서 日本은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연어·송어

資源은 兩國間에 주된 관심사로서 蘇聯은 同魚種에 대하여 資源保存이라는 명목으로 오호츠크海의 公海에서의 漁獲禁止措置를 취하여 日本의 操業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와같은 措置는 日本이 주장하는 公海自由의 原則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은 國力을 바탕으로 한 蘇聯의 일방적인 조치에는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었다.

B. 漁業協定の 체결과 쿼타 配定

日本과 蘇聯과의 漁業關係는 1976년 12월 蘇聯이 200해리 漁業專管水域을 선포하고 이를 1977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蘇聯이 이러한 措置를 취한 背景에는 美國이 1977년 3월부터 200해리 漁業水域을 선포하고, 美國 漁業水域內에서의 蘇聯의 漁業을 규제하게 되자 美國과 보조를 같이하고 自國水域內에 外國漁船이 入漁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自國의 漁業을 보호하려는데 있었다.

蘇聯은 200해리 漁業水域設定과 관련하여 이 水域內에서의 外國漁船의 操業은 漁業協定에 의해 漁獲 쿼타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日本은 漁業協商을 서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1977년 3월에 漁業交渉을 시작하여 1977년 5월에 가서야 「日·蘇 漁業暫定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도 1977년 5월 「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을 공포하여 200해리 漁業水域을 12해리 領海와 함께 同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200해리 水域暫定措置法은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를 고려하여 東經 135° 以西의 日本海 및 黃海·東支那海水域을 適用對象에서 유보

함으로써 이 水域은 蘇聯을 겨냥한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70년부터 蘇聯의 트롤漁船들이 대거 北海道 周邊水域에 나타나서 日本 漁民을 불안하게 하였으나, 그 반면 日本 漁民도 蘇聯沿岸에서 漁撈活動을 할 수 있는 相互性이 있었기 때문에 蘇聯漁船의 日本沿岸 操業을 묵인하였던 것인데, 蘇聯이 200해리 漁業水域을 선포함에 따라 日本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1977년에 체결된 「日·蘇 漁業暫定協定」의 主要內容은 蘇聯의 200해리 漁業水域內에서 日本漁船의 操業을 규제하는 것이며, 相互의 漁業水域에서 每年 漁獲쿼타를 배정받아 조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同協定の 체결로 日本은 漁獲쿼타 확보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종래의 漁業協定에서는 연어·송어, 게 및 청어만이 規制對象이었으나 1977년의 協定에서는 전체 魚種에 대하여 쿼타가 배정되어지고 또한 연어·송어는 1978년에 별도로 체결된 「日·蘇 漁業協力協定 및 日·蘇間의 연어·송어 議定書」에 의거, 特別規制를 받게 되었다.

<표 5-1> 日·蘇間 漁獲쿼타의 15) 變遷 (단위 : 천M/T)

	19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蘇聯水域內 日本側	455	850	750	750	750	750	750	700	600	150
日本水域內 蘇聯側	335	650	650	650	650	650	650	640	600	150

그동안의 漁獲쿼타의 추이를 보면 蘇聯의 200해리 水域設定以前에 蘇聯 水域에서 日本이 어획한 總漁獲量은 연간 150만M/T 수준이었으나 設定 後의 쿼타량은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였다. 특히 主漁獲魚種인 명태는 100만M/T 수준에서 1/3 정도인 29만M/T으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蘇聯은 종래 最高漁獲實績이 66만 5천M/T으로서 主漁獲魚種인 고등어, 정어리 漁獲量 50만M/T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實績을 漁獲쿼타량에서 획득하고 있다.

漁獲쿼타에 대한 兩側의 기본 입장은 日本은 과거의 漁獲實績을 기준으로 하는 實績主義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蘇聯은 相互間 쿼타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等量主義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兩側의 상반된 입장은 協商을 어렵게 하였으며, 결국은 蘇聯側의 主張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1985년에는 漁獲 쿼타가 前年水準에서 동결되었으며, 1986년에는 더욱 반감되어 前年の 1/4 수준으로 되었고, 底刺網漁業 및 着底트롤漁業이 각각 전면 또는 일부 금지되고 操業條件도 악화되었다.

특히 蘇聯의 第12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첫해인 1986년부터는 고르바 초프 政權의 全産業에 대한 經濟效率化政策으로 漁業分野에는 「自國의 資源은 自國에서 消費한다」는 원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動物性 蛋白質 供給源으로서의 重要性이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蘇聯은 과거부터 주장해온 等量主義원칙과 함께 漁業資源管理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7. 南北韓間의 漁業關係와 韓國의 自律規制

北韓의 艦艇에 의한 韓國漁船의 拉致事件은 休戰成立後 줄곧 自행되어 왔고 특히 1960년대에 극심하여 1954년부터 87년까지 拉北된 총척수 458척의 2/3이상인 309척이 이 기간에 拉北된 것이며, 1970년대 이후 많이 감소되었으나 韓國으로서는 늘 불만을 느껴왔다(표 5-2).

따라서 韓國政府에서는 拉北을 예방하기 위하여 1964년 6월, 農林部例規 32호로서 漁撈限界線을 설정하였는데, 그 線은 軍事分界線에 맞추어 東海에서는 북위 38도 35분 45초에서 正東으로 그은 선, 西海에서는 江華島 西北端부터 시작하여 불규칙적인 경로를 거쳐 북위 37도 25분, 동경 125도 50분에 이르고, 거기로부터는 正西로 북위 37도 25분, 동경 124도 44분 45초에 이르며, 거기서부터 다시 北上하되 그 北쪽 한계는 북위 38도 03분에서 正西로 그은 선으로 하였다.

<표 5-2> 韓國漁船의 拉北 및 歸還現況(1987년말 현재)

(단 위 : 어선척수 / 인원수)

구 분	拉 北			歸 還			未 歸 還		
	計	東 海	西 海	計	東 海	西 海	計	東 海	西 海
1954~59	92/625	22/134	70/491	89/590	21/118	68/472	3/35	1/16	2/19
1960~69	309/2173	119/914	190/1259	290/1943	115/836	181/1107	22/265	9/145	13/120
1970~79	47/674	21/410	26/264	38/534	20/391	18/143	31/405	10/163	21/242
1980~87	10/161	2/54	8/107	9/148	2/54	7/94	32/418	10/163	22/255
計	458/3633	164/1512	294/2121	426/3215	154/1347	274/1761	32/418	10/163	22/255

자료 : 해양경찰대

그러다가 위와 같은 北韓의 挑發을 예방하기 위해 漁撈限界線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어 1967년 12월, 內務, 國防, 農林 3部長官合同告示 로서 東·西兩海區에서 限界線을 대략 1해리씩 南下시켜 東海에서는 북위 38도 34분 45초로, 西海에서는 그 最北端을 북위 38도 02분 00초로 하였으며, 漁撈限界線 南쪽의 일정水域에는 特定海域을 설정하여 出漁하는 漁船은 반드시 船團을 편성하고, 또한 事前申告를 해야 하는 등의 통제가 가해졌다.

이 限界線은 그동안 事態의 악화에 따라 자꾸만 南下되어, 가장 심할 때는 東海에서는 軍事分界線에서 6해리, 西海에서는 5~7해리나 南下되었으나, 최근 東西間, 南北間 和解무드가 조성되면서 다소 北上조정하여 分界線과의 거리는 3해리 정도로 좁혀졌다(표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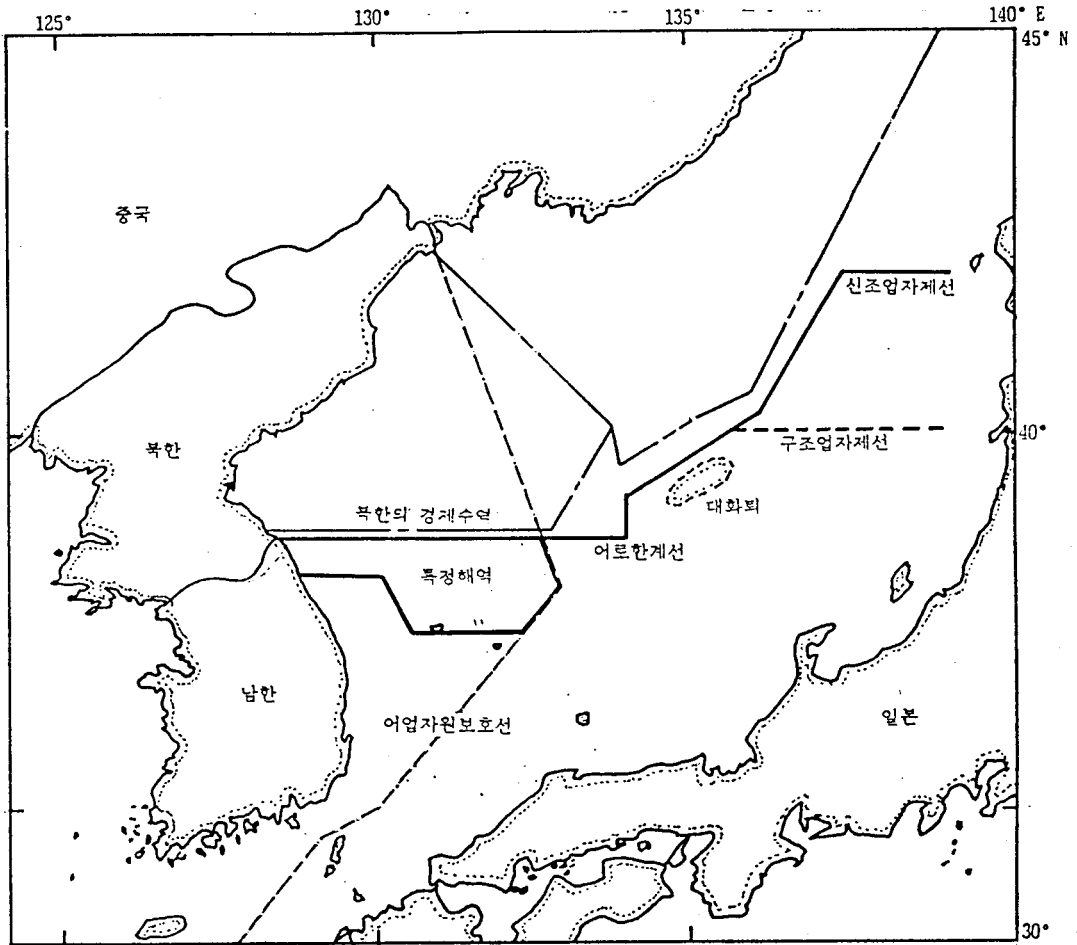
이러는 사이 우리 漁船團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서 1970년대부터는 東海 중심부 북위 39도~39도 30분, 동경 134도~135도 30분 사이에 東西로 길게 뻗어 있는 大和堆를 중심으로 한 일대 海域이 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魚族의 좋은 漁場이라는 것이 알려지므로서 우리 漁船團이 대거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1977년 蘇聯과 北韓이 잇달아 200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 大和堆가 그 經濟水域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 漁船團의 활동이 그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 불안해졌으므로 1978년 5월, 水協中央會 명의로 大和堆漁場 근처에 操業自律規制線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漁撈限界線 調整狀況

근 거	일 자	동해 어로 한계선	서해 어로 한계선
農林部 例規 32호	'64.6.29	북위 38도 35분 45초	북위 38도 03분 (군사분계선과 동일)
水産廳 訓令 46호	'67.12.5	북위 38도 34분 45초 (1마일 남하)	북위 38도 02분 00초 (약2마일 남하)
內務, 國防, 農林 3部長官 合同告示	'68.11.25	북위 38도 30분 00초 (약5마일 남하)	
內務, 法務, 國防, 農林 4部長官 合同告示	'69.3.10		약 5~7마일 남하
內務, 法務, 國防, 農林 4部長官 合同告示	'69.4.14		강화도와 석모도간의 일부어장 개방
中央對開諜對策 會議에서 의결	'70.3.20		서해만도리 어장(석모도남단→ 주문도남단→신도로 연결)
國務總理주재 長 官會議에서 의결	'71.5.10	성어기 어로허용선 설정 (북위 38도 33분 00초, 기간 11.1-익년 2월말)	성어기 어로허용선 설정(신도→ 소연평도정상→북위 37도 30분 동경 125도 00분점을 순차적 으로 연결한 선)
內務, 國防, 農林, 交通 4部合同部令	'72.4.17	북위 38도 30분 00초 (4부합동으로 상향조정)	전기와 같음
	'80.7.18		어로한계선연장(북위 37도 55분 동경 124에서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 중국쪽 외곽선 설정
	'89.4.13	북위 38도 33분 00초 (성어기 어로허용선 삭제)	연평도 서부해역 남하, 강화도 및 만도리어장 북상

자 료 : 水産廳



〈그림 5-4〉 韓國의 東海쪽 漁撈限界線 및 大和堆漁場 漁撈限界線
(자료 : 水産廳)

그러나 그 후 1980~81년에는 여기서도 우리 漁船의 拉致事件이 발생하자 政府에서는 1982년 4월 前記 水協의 自律規制線을 기초로 하여 內務, 國防, 農林, 交通의 4部 合同部令인 船舶安全操業規則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한 水産廳告示로서 大和堆漁場에서의 操業自制線(北쪽 한계는 북위 40도선)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세계의 和解對話무드가 형성되고 拉致事件이 줄어들었으며, 近海의 魚資源 감소로 漁場의 확대가 요망되므로 1990년 10월부터는 大和堆漁場에서의 漁撈限界線도 북위 40도선에서 42도선으로 120해리 北上시켰다.

漁撈限界線 근처에서 韓國漁船의 拉北事件이 자주 일어나는 原因은 漁船團이 계절에 따라 이 海域에 집중되는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韓半島近海에 있어서의 漁場形成의 特性에 기인한다. 즉 韓國近海産의 回遊性魚族은 전부 계절따라 南北回遊를 하므로 봄철의 北上回遊期에는 魚群이 이동하는대로 조업하다 보면 北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또 가을철 南下回遊期에도 魚群이 漁撈限界線 근처에 왔을 때에는 北으로 갈수록 魚群密度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역시 北으로 치우치기 쉽다.

특히 東海産 主魚種의 하나인 資源量도 매우 큰 명태는 咸鏡南道 新浦를 중심으로 한 東韓灣 일대가 主産卵場이고 主漁場도 그 일대이며, 分布密度가 항상 北쪽이 높으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漁獲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이 조금이라도 北쪽으로 치우쳐 조업하고자 하는 현상을 빚게 한다.

이 현상은 西海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조기의 北上回遊期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즉 조기는 봄부터 여름에 걸치는 産卵期에는 沿岸을 따라 北上하면서 産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봄에 黑山島에서부터 시작하여 沿岸을 따라 魚群이 이동하고 그걸 따라 漁船이 이동하는

波市現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黃海道 延平島에 가서 절정에 이루는 것이 光復前 西海 일대의 풍속도였다. 그런데 그 延平島가 漁撈限界線 北쪽에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한발이라도 더 北쪽으로 가서 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漁夫들이 기지고 있는 자연적인 욕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차에 北韓側에 의한 挑發도 또한 심했다. 많은 拉北事件이 우리 漁船이 越線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北韓艦艇이 수마일씩이나 限界線을 넘어와서 漁船을 拉致해 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8. 韓國과 中國間과의 漁業關係와 韓國의 自律規制

黃海·東支那海漁場은 과거에는 日本의 독무대였으나 1950년대 이후 韓國과 中國漁船의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완전히 삼파전이 되었으며 力學的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되었다.

우선 韓國과 中國 사이는 韓國戰爭으로 인하여 敵對關係에 있었으므로 漁業關係에 있어서도 미묘하였었다. 즉, 中國은 1950년에 소위 毛澤東 라인이라 불린 三浬漁業禁止區域을 설정함으로써 自國의 近海漁場을 排他的으로 관할하기 시작했다. 韓國은 中國의 이 毛澤東라인을 의식한 것은 아니고 日本에 대한 방어선으로서 平和線이라고 하는 水産資源保護線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外國漁船의 漁業활동에 제한을 가한 것인데, 1965년에 韓日漁業協定이 체결됨으로써 日本에 대한 방어선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러나 日本이외의 外國에 대하여는 아직 法的效力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中國에 대한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마는, 中國漁船의 침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그러나 1975년 日中漁業協定이 政府次元에서 체결된 후 中國은 韓國
 漁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1975년 이전에 10척, 1976년 이후에 8척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표 5-4).

이에 대하여 韓國政府는 韓國漁船이 公海上에서 조업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漁撈禁止區域을 침범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公海
 상에서 當事國間의 합의 없이 漁撈行爲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國際法
 위반임을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하다면 關係者間의 協議를 요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마는 中國은 이에 응해
 오지 않았었다.

이에 韓國政府는 우리 漁船團에 대한 自律規制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5년
 1월, 水産廳訓令으로서 「水産業에 관한 許可事務取扱規則」에 의거

〈표 5-4〉 韓國近海에서의 韓國漁船 被捕狀況

상대국	시 기	척수	비 고
中 國	75년 이전	10	전부 귀환
	76년 이후	8	전부 귀환 80년 이후 없었음
	계	18	
蘇 聯	75년 이전	1	전부 귀환
	76년 이후	6	전부 귀환
	계	7	

자료 : 해양경찰대

自律規制線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대체로 日·中漁業協定線에서 東쪽으로 緯度로 30분 내지 90분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이며, 日·中漁業協定の 保護區 및 休漁區 등과 대략 15분쯤의 완충해역을 설정한 것이다. 이 선은 1976년 7월에는 「東支那海 安全操業을 위한 指導指針」, 同年 8월에는 「黃海 및 東支那海 出漁船에 대한 規制事項告示」로서도 추진되었으며, 또한 이 自律規制線에서 東쪽으로 經度로 40분쯤되는 곳에는 船團編成 強化線을 설정하여 조업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1979년 1월, 日·中 協定이 개정되면서 保護區가 신설 내지 확장됨에 따라 外務部의 요청으로 自律規制線을 東쪽으로 經度 20분만큼 이동설정함으로써 그만큼 漁場이 좁아졌으나, 80년대 들어 中國과의 사이에 和解무드가 조성되고, 한편에서는 沿近海漁業資源의 고갈로 漁業經營收支가 악화되어 漁場擴大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1985년 10월, 水産廳告示(沿近海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한 規制事項)로서 規制線을 經度로 10분 西쪽으로 이동시키고 保護區 및 休漁區와의 사이에는 經度로 5분 이상의 완충해역을 설정했으며, 1989년 4월에는 역시 水産廳告示로 自律規制線을 中國의 資源保護區域 및 休漁區域의 외곽선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이와같은 操業自律規制線의 설정은 그 자체가 日中漁業協定水域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나 韓國과 中國과의 力學關係가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한 政治的인 措置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 최근에 兩國間的

〈표 5-5〉 中國漁船의 韓國領海에의 緊急避難實績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척 수	785	1562	1703	2381	2026	3258	2295	3651

자 료 : 해양경찰대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그에 따라 漁業關係도 많이 개선되어 1989년 12월에는 韓國의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中國의 東海漁業協會間에 「漁船 海上事故處理에 관한 合意書」가 체결되어 199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公海上의 漁場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兩國의 漁船과 漁具에 관련되는 事故를 처리하기 위한 指針을 정한 것이나, 兩國間의 關係가 개선된 하나의 증표로 볼 수 있으며, 또한 中共漁船의 韓國에의 緊急避難實績(표 5-5)을 보면 濟州道 및 黑山島에 피난한 中國漁船의 수는 1981년에는 785척이었으나 1988년에는 3651척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中國漁船의 緊急避難이 많아진 이유는 中國漁船이 그만큼 漁船數도 늘고 또 遠海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兩國間에 漁業水域을 놓고 장차 마찰이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漁業協定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兩國間 協議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VI. 南北韓共同漁撈水域의 設定 및 運用方案

1. 共同漁撈水域設定의 前提條件

南北韓間에 共同漁撈水域을 設定하기 위해서는 우선 兩者 사이에 최소한도의 對話通路가 있어야 하고, 또 相對方의 實體를 인정해야 하는 등 政治的으로 고도의 難題가 있으나 그 문제는 이 課題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런 對話의 通路는 열려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그 다음에 南北韓間에 共同漁撈水域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北韓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놓은 排他的 經濟水域과 軍事境界水域이다. 우선 經濟水域의 선포는 그 水域안에 내포된 水中資源은 물론 海底資源까지도 主權的 權利를 가지고 排他的 管轄權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韓國은 자체 漁船團이 海外漁場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어서 200해리 水域의 設定을 반대해 온 입장도 있거니와 中國, 日本 등 관련국가들을 자극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200해리 水域의 선포를 유보하고 있다.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이미 오래 전에 國際法上的 法的制度로서 성립된 것이며, 韓半島周邊國家만 하더라도 韓國과 中國만 유보하고 있을 뿐, 蘇聯, 日本도 취하고 있는 조치이므로 經濟水域의 선포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水域의 設定方法의 適法的이 문제이다. 우선 이 水域을 설정할 때는 그 나라가 공인하는 大縮尺海圖(대체로 8만분의 1 이상)에 명시된 干潮線을 基線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灣은 灣口閉鎖線이 24해리 이하일 때만 兩端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直線基線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東海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灣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東韓灣 자체를 이러한 성질의 灣으로 보아서 咸鏡北道의 北端 수유리로부터 江原道의 杆城까지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을 基線으로 삼고 있으니 이는 國際法上의 原則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 볼 수 있다.

또한 그 水域의 境界가 다른 나라의 經濟水域의 境界와 겹쳐질 때는 相互協議하여 等距離 中間線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休戰線의 東海岸쪽 기점에서 正東으로 境界線을 긋고 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北韓이 基線으로부터 50해리까지에 설정한 軍事境界水域인 바, 이것은 西海에서는 經濟水域 자체가 基線으로부터 50해리가 못되므로 西海全域을 이와 같은 經濟水域 및 軍事境界水域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水域은 그들이 韓國의 軍事的侵犯에 대비하여 획정한 것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있는데, 과거 비록 民間次元에서의 協定일지언정 日本과의 사이에 「漁業에 관한 暫定合意書」를 체결하여 經濟水域內의 入漁를 허용하면서도 이 軍事水域에의 入漁는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것은 北韓의 近海漁業의 중요한 漁場의 대부분이 이 수역안에 포함되는 것에서 미루어 軍事水域이라는 명목하에 近海漁場을 排他的으로 독점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

그런데 이 水域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雙方間에 軍事的對峙關係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 이 水域에는 北韓産 명태 主漁場의 대부분이 포함되느니만치 이 水域을 완전히 배제하고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한다는 것은 韓國側으로서의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또, 北韓이 經濟水域을 건지하고자 한다면 만부득이 韓國도 經濟水域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經濟水域의 선포 자체가 國際的인 慣行이 되어 있고 오히려 韓國은 아주 늦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니만치 하등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經濟水域의 경계를 놓고는 南北韓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休戰協定 당시 軍事境界線 자체를 陸上에만 획정하고 海上에는 획정하지 않았던 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休戰協定 이후 休戰線 근처에서 韓國漁船이 北韓의 艦艇에 의해 일방적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韓國政府가 漁船의 漁撈限界線을 정하면서 基点을 休戰線보다는 약간 南쪽에 잡고 거기에서 正東으로 선을 그어 韓國 漁船에 대한 自制를 촉구하는 의미의 限界線을 설정한 것인데, 이것을 北韓은 흡사 韓國이 軍事分界線이나 혹은 漁撈水域의 境界線으로서 이 선을 획정한 양 악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水域을 정식으로 公認을 받으려면 그 境界에 관하여는 隣接國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國際法上 일반적으로 인정된 等距離中間線原則에 의하여 境界線이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北韓과 蘇聯과의 사이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1986년에 「經濟水域 및 大陸棚의 境界에 관한 條約」을 체결하여 경계를 획정한 바 있다.

따라서 韓國과의 사이에서도 우선 이 境界의 획정 자체가 커다란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림 5-2>는 1977년에 美國務省 地理局에서 東아시아 北部에 있어서의 管轄水域을 等距離中間線原則에 따라 假想的으로 구획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서 보면 東海에 있어서의 境界는 지금의 漁撈限界線보다는 基点이 북쪽으로 이동해야 함은 물론이고, 角度도 18도 정도 北쪽으로 치우쳐야 한다.

또, 西海에 있어서는 韓國, 北韓, 中國 3나라 사이에서 이와 같은 協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선 南北韓 사이의 等距離 中間線을 <그림 5-2>에서 보면 大靑島와 延平島 사이에 헛바닥 모양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섬의 분포에 따라 순전히 기하학적으로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나, 획정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고, 또 면적도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協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상의 觀点에서 볼 때, 南北韓間에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하려면 다음 4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며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어야만이 協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첫째는 北韓側의 基線의 再調整이다. 共同漁撈水域은 領海의 外側水域에 설정하여야 할 것인데, 領海 外側의 境界線 자체가 南北韓間에 동등한

조건하에 國際法上的 원칙에 맞도록 확정되지 않고서는 兩側이 대등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北韓이 선포한 軍事境界水域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철폐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軍事的 對峙關係가 존속한다는 뜻이며, 그런 상황에서는 民間次元은 고사하고 政府次元에서도 協商 자체가 추진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는 經濟水域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韓國側에서도 대등한 經濟水域을 선포하거나 혹은 北韓이 經濟水域의 適用 對象國에서 韓國을 제외하거나 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네째는 南北韓間의 管轄水域의 境界劃定の 문제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國際法上的의 等距離中間線原則에 맞도록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2. 共同漁撈水域의 設定과 그 運用方案

A. 協定當事者

兩國家間의 漁撈水域設定에 관한 문제는 政府間協定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國際的인 慣行이지마는 雙方間에 서로 國家的 승인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政府間協定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相互國家承認이 없는 상태에서 協定이 이루어진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77년부터 시작되어 단속적이기는 하지만 1989년까지 20년이

넘도록 지속된 北韓-日本 사이의 漁業協定, 兩國間承認이 이루어져 政府間協定으로 발전하기 전인 1955년부터 시작하여 1974까지 20년간 지속된 中國-日本 사이의 漁業協定 등이 그것이다.

이들 協定の 두드러진 특징은 民間次元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北韓-日本 사이의 協定은 暫定合意書라는 이름으로 北韓의 東海水産協同聯盟과 日本의 日·朝漁業協議會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고, 中國-日本 사이의 漁業協定은 中國의 漁業協會와 日本의 日·中共同漁業協議會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이런 예에서 본다면 南北韓이 相互國家承認으로 國交가 이루어져 政府間協定을 체결할 수 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위의 北韓-日本間的 協定이나 中國-日本間的 協定과 같이 民間次元에서의 協定을 체결하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韓國側을 대표하는 民間團體로서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B. 一方入漁方式의 경우

어느 나라의 管轄水域에 漁船이 들어가서 漁撈行爲를 하는 방법(보통 入漁한다고 한다)을 크게 가르면 一方入漁方式과 雙方入漁方式이 있다.

一方入漁方式이란 어느 一方의 漁船이 他方의 管轄水域에서 조업하는 방식이며, 入漁를 허용하는 代價로서는 入漁料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韓國의 遠洋漁船들이 아프리카 기타 各沿岸國의 管轄水域內에서 入漁權을

취득하여 조업하는 형태는 이러한 一方入漁方式인 경우가 많다.

이 때 入漁料 支拂方式은 크게 가르면 許可取得과 동시에 지불하는 방식과 漁獲量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漁獲量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許可取得과 동시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미리 漁船의 크기, 漁撈方法, 對象物 등에 따라 雙方協議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대개의 경우 被入漁國은 漁業의 발달정도가 낮으므로 자체 개발의 필요상 入漁하는 漁船에 대하여 自國國民을 일정 비율 이상 船員으로서 고용할 것을 入漁條件의 하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南北韓間의 漁業關係에 있어서도 韓國側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北韓의 管轄水域에의 韓國漁船의 一方的 入漁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韓國側 海域은 일찍부터 韓國, 日本, 中國 등 各國漁船의 남획으로 漁業資源의 보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業界 스스로가 船幅量의 減縮을 요망하고 있을 정도이니, 가능하다면 이 이상 漁船이 투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資源保護라는 측면에서 北韓側이 꺼려할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北韓도 최근에 와서 水産物의 增産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1993년에 끝나는 제3차 7個年計劃에서는 지금의 生産能力의 4배나 되는 1100만M/T이라는 生産目標를 설정하는 등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生産能力이나 加工能力에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生産施設 같은 것을 지원하는 代價로서 일부 海域, 특히 東海의 명태, 정어리, 오징어, 연어·송어 등의 漁場에의 一方的 入漁를 교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C. 雙方入漁方式의 경우

南北韓間에 共同漁撈水域設定은 雙方이 서로 他方の 管轄水域에 入漁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協定の 內容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水域의 범위, 對象魚種과 漁撈方法, 漁船의 規模와 隻數, 漁獲量, 協定違反에 대한 團束節次, 存續期間, 管理機構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1) 共同漁撈水域의 범위

먼저 共同漁撈水域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北韓의 東·西兩水域에 있어서 雙方間 經濟水域의 境界로부터 北側 國境까지의 직선거리가 東海에서는 약 500해리, 西海에서는 약 200해리인데, 共同漁撈 水域은 雙方의 境界로부터 雙方의 水域內에 等距離로, 境界에 平行으로 그은 線까지의 水域으로 하는 것이 水域의 管理상이나 規制를 확실히 하기에 도 편리할 것 같다. 만약 이 原則이 적용된다면 東海, 西海 모두 우선 그 水域의 폭을 100해리 정도로 하여 운영해 가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2) 共同資源調查水域의 설정

雙方의 經濟水域 혹은 이에 준하는 水域범위 중 共同漁撈水域의 外側에는

共同資源調查水域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장차 共同漁撈水域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 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南北韓의 研究者, 科學者들 사이의 友好와 協力을 증진시켜 共同繁榮을 도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對象魚種 및 漁撈方法, 漁船의 規模, 漁船의 隻數 및 漁獲量 등

對象魚種 및 漁撈方法으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東海區에서는 연어·송어, 콩치, 멸치, 오징어, 명태 등을 대상으로 하는 流刺網,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채낚기, 명태 등을 대상으로 하는 機船底引網과 트롤, 게, 새우, 고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 등이 있을 수 있고, 西海區에서는 조기, 갈치, 새우, 게 등의 각종 底棲魚族을 대상으로 하는 機船底引網, 트롤, 鮫鱧網 등이 있을 수 있다.

漁船의 規模는 近海漁業資源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遠洋漁業에 쓰이는 大型船의 투입은 피하고, 과거 北韓과 日本 사이의 民間協定에서처럼 총톤수 200톤 이하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漁船의 隻數는 兩國이 同數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入漁隻數는 協定되는 水域의 面積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漁獲量은 協定된 水域의 面積, 潛在資源의 豊度, 투입되는 漁獲努力量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나 資源의 유지관리상 過度漁獲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協定違反에 대한 規制

協定違反에 대한 規制措置는 대개의 漁業協定이 領海나 專管水域內에서의 위반에 대하여는 沿岸國에게 團束과 裁判管轄權을 주고, 共同漁撈水域內에서의 위반에 대한 團束 및 裁判管轄權은 漁船의 國籍國에게 주는 소위 旗國主義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관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相對國 漁船이 協定을 위반했을 때는 一方締約國은 그 사실을 他方締約國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他方은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相對方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南北韓間의 協定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旗國主義는 어디까지나 相對方을 믿는 信賴의 바탕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여태까지 늘 相互不信속에 살아온 南北韓間에 그것이 쉽게 이룩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5) 存續期間

協定の 存續期間은 과거 民間協定이던 시기의 日·中協定은 기본적으로 1년, 朝·日漁業協定은 2년으로 정해놓고 雙方協議에 의해 갱신을 반복해 왔는데, 南北韓間의 協定도 이 先例에 따라 처음 단계에서는 2년 정도로 했다가 갱신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 安全操業對策

共同漁撈水域內에서의 安全操業을 위해서는 雙方은 각기 自國의 漁民과 漁船에 대하여 航行과 操業의 安全, 秩序의 유지, 海上事故에 대한 대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어느 一方의 漁船이 他方の 管轄水域內에서 緊急事態가 발생했을 때는 他方은 漁船과 船員에 대하여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느 一方의 漁船이 他方の 管轄水域內에서 緊急避難의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他方の 關係當局에 통보하면 他方은 지정된 항구의 緊急避難을 허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船員의 上陸도 허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管理機構

管理機構로서는 共同委員會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同委員會는 관례로 보아 各國에서 3人씩의 委員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同協定の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同委員會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每年 번갈아 雙方의 首都에서 會議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3. 積極的 姿勢의 必要性

여태까지 韓國은 北韓이나 中國 등 共產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消極的인 姿勢를 취해 온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漁業水域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中國에 대하여는 操業自律規制線, 北韓에 대하여는 漁撈限界線을 설정함으로써 自國漁船의 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해 왔다.

이것은 韓國의 漁業이 對象國보다는 발달했고, 또 계절에 따라서는 相對方 水域에 비교적 좋은 漁場이 형성되기 때문에 相對方 漁船이 韓國의

管轄水域을 침범하는 사례보다는 韓國漁船이 相對方 管轄水域을 침범하는 사례가 잦은데다가 相對方이 好戰的이어서 自己내 水域을 침범하지 않은 韓國漁船도 함부로 拉致 또는 拿捕하는 事故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事故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그 限界線을 國際的으로 韓國側이 주장할 수 있는 假想的 境界線보다 안쪽에 劃定한데서 앞으로 南北韓間의 管轄水域의 境界를 劃定할 때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이러한 線들이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 境界線으로서 固着化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특히 北韓과 같이 영똥한 主張을 잘 하는 특성을 가진 相對에 대하여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韓國도 200해리 經濟水域을 宣布하는 문제를 積極的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때에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境界를 제시해 놓아야만 후일 이 境界에 관하여 논의할 때 명분있는 근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韓半島周邊 海域에서의 漁業政策, 특히 對共產圈政策은 보다 더 積極的인 姿勢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VII. 結 論

漁業은 南北韓 모두가 중요한 産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데, 南北韓間에 交流가 없는 것은 피차의 漁業發展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漁業의 發展이라는 측면에서도 南北韓間의 交流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漁業分野에서의 南北韓間의 交流의 한 方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南北韓間에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하여 南北韓 漁船이 함께 조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하는 경우를 가상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韓國近海의 海洋構造와 重要資源의 回遊相을 분석하여 共同漁撈水域 設定時 對象物이 될 가능성이 큰 魚種을 도출하고, 그 다음 韓國 水産業의 需要 및 供給現況, 2000년대 초에 있어서의 需要 및 供給展望 등을 분석하여 韓國의 對外協力の 必要性을 논의하는 한편, 北韓의 海洋特性, 水産政策 및 管理體制, 水産業의 基盤, 水産物 生産現況, 앞으로의 展望과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課題 등을 분석·비교하였다.

또한 韓半島 周邊水域에 있어서의 各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宣布現況과 그 영향, 韓國과 日本, 中國과 日本, 北韓과 蘇聯, 北韓과 日本, 日本과 蘇聯, 韓國과 北韓, 韓國과 中國 등 各國間의 漁業紛爭과 漁業協定の 체결

등 漁業에 관한 力學的 關係를 검토함으로써 南北韓間에 설정될 共同漁撈 水域의 모델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自然的, 人爲的인 周邊環境에 입각하여, 南北韓間에 共同水域을 설정하고자 할 때 먼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問題點을 도출하였는데, 그것은 대략 다음 4가지로 집약된다.

그 첫째는 北韓이 經濟水域을 선포하면서 東海쪽에 설정한 直線基線인데, 이것은 國際法上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基線을 干潮線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며, 둘째는 北韓側이 설정한 50해리 軍事境界水域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北韓이 經濟水域의 適用對象國에서 韓國을 제외하거나 韓國이 國際法上 정당성 있는 經濟水域을 선포해야 하는 문제이며, 넷째는 管轄水域의 境界를 國際法上의 等距離 中間線을 원칙으로 하여 확정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協定當事者가 문제 되는데, 이는 雙方政府가 되는 것은 당연하나 相互間 國家承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곤란하다면 과거의 北韓-日本 사이의 漁業協定이나 中國-日本사이의 漁業協定과 같이 民間次元에서의 協定도 가능할 것이며, 이런 경우의 韓國側의 民間代表로서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가장 무난할 것 같다.

또 入漁方式에는 어느 一方이 他方의 水域에 들어가서 漁撈活動을 하고 그 代價로서 入漁料를 지불하는 一方入漁方式과 雙方이 서로 他方의 水域에

들어가서 漁撈活動을 하는 雙方入漁方式이 있는데, 韓國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韓國漁船이 北韓水域에 一方的으로 入漁하는 方式이나 실제로는 이 方式의 실현이 어려울 것 같으며, 雙方入漁方式이 될 공산이 크다.

雙方入漁方式을 취할 때의 共同漁撈水域의 범위는 일단 雙方의 管轄水域의 境界로부터 100해리씩의 等距離線까지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으며, 그 후 雙方의 合意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共同漁撈水域의 外側, 相互 經濟水域의 內側에는 共同資源調查水域을 설정하여 共同으로 資源調查活動을 실시, 資源의 動態를 파악함으로써 共同漁撈水域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對象魚種 및 漁撈의 方法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東海區에서는 연어·송어, 콩치, 멸치, 오징어, 멧태 등을 대상으로 하는 流刺網과 트롤, 게, 새우, 고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 등이 있을 수 있고, 西海區에서는 조기, 갈치, 새우, 게 등 各種 底棲魚類를 대상으로 하는 機船底引網, 트롤, 鮫鱧網 등이 있다.

共同漁撈水域에 入漁하는 漁船의 規模는 과거 北韓-日本 사이의 民間協定에서처럼 총톤수 200톤 이하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으며, 漁船의 隻數와 漁獲量은 雙方이 同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漁獲量의 문제는 資源保存上 미묘한 문제이므로 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協定の 違反에 대한 規制와 裁判管轄權은 領海나 專管水域侵犯에 대하여는 沿岸國이 행사하고, 共同漁撈水域內에서의 違反에 대하여는 漁船의 國籍國에게 주는 소위 旗國主義의 原則을 적용하는 것이 國際的 慣行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協定の 存續期間은 일단 2년으로 하여 갱신해 가는 것이 무난할 것 같으며, 同水域에서의 安全操業對策으로서는 어느 一方의 漁船이 他方の 管轄水域內에서 緊急事態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他方は 漁船과 船員에 대하여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고, 또 一方의 漁船이 他方の 管轄水域內에서 緊急避難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他方は 指定된 港口에의 避難을 허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同協定の 管理機構로서는 각 3인씩의 委員으로 구성된 共同委員會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韓國은 이때까지 北韓이나 中國 등 共產圈國家 周邊水域에서의 韓國漁船의 漁撈活動에 대하여는 漁船의 被拉防止上 相對方 水域과의 境界보다는 韓國쪽에 가까이 漁撈限界線 또는 自律規制線을 설정하여 韓國漁船의 活動을 제한하여 왔는데, 이러한 線들이 오랜 기간 후에는 자칫 韓國쪽에서 설정한 境界線인양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國際法上의 原則에 입각한 排他的 經濟水域의 선포 등 積極的인 姿勢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1) 共產圈問題研究所：北韓大辭典，1979.
- 2) 北韓研究所：北韓總覽，1983.
- 3) 產業研究院：北韓，1989.
- 4) 國土統一院：南北韓比較叢書，1988.
- 5) —————：南北韓經濟現況比較 - 1989년말 기준 -
- 6) —————：北韓經濟概觀，1989.
- 7) —————：1988년도 北韓經濟綜合評價
- 8) —————：南北經濟概觀，1989.
- 9) —————：北韓의 漁撈實態調査
- 10) 朴椿浩，柳炳華：海洋法，民音社，1986.
- 11) 金榮球：現代海洋法論，아세아社，1988.
- 12) 安國全：韓·日·中共間 漁業關係에 관한 研究，國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1988.
- 13) 水產振興院：沿近海主要魚種의 生態와 漁場，1985.
- 14) 水產廳：水產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1988.
- 15) 日本水產社：水產年鑑，1977，1978，1980，1987.
- 16) 日本農林統計協會：昭和61年度 漁業白書，1986.
- 17) 李秉錡：北洋漁業論，太和出版社，1971.
- 18) ————：沿近海漁業概論，太和出版社，1989.

- 19) 李秉錡 : 遠洋漁業의 새로운 展開方向, 2000年代 水産資源開發展望
심포지움, 水産學會, 漁業技術學會, 水産振興會 共同開催,
1987.
- 20) —— : 海外水産業의 開發과 技術協力方案, 漁業技術學會誌 25(3),
1989.
- 21) 韓國水産會 : 水産年鑑, 1987, 1988, 1989.
- 22) Chiknui, S : Fisheries Resources and Fisheries, FAO, 1988.
- 23) Fluharty, D : National Fisheries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Sea
between Japan, Korea and Soviet Un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88.
- 24) Jong-Kul Kwon: Fisheries of North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1989.
- 25) Young-Gyu Kim: Fishing in North-east Asia; What will be Korea's manage-
ment alternative to depleted shared stock,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86.
- 26) F.A.O. : Fishery statistics Vol.64, 65, 1987.

南北韓 共同漁撈水域

— Model 設定과 運用方案 —

인 쇄 : 1990 년 12 월 26 일

발 행 : 1990 년 12 월 28 일

발 행 처 : 국 토 통 일 원
(제 1 교 류 협 력 관 실)

인 쇄 처 : 금 강 문 화 인 쇄
(279-6901)

< 비 매 품 >

